

1~15차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User's guide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 차

I. 재정패널 조사 소개	3
1. 조사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대상	4
가. 가구 조사	4
나. 가구원 조사	9
3. 실사과정	13
가. 조사 기간	13
나. 조사 방법	13
다. 조사 기관	13
라. 조사 일정	13
4. 조사 결과	14
가. 1~15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	14
나. 차수별 응답 가구	15
다. 계속 응답 가구	21
라. 설문지 응답자	22
II. 표본설계와 가중치	25
1. 표본설계	25
가. 모집단	25
나. 표본틀	25
다. 1차년도 표본 추출	25
라. 1차년도 표본설계 가구 응답률 산출과정 및 결과	27
마. 2차년도 표본추출	28
바. 2차년도 최종 표본 구성	29
사. 13차년도 횡단표본 조사 설계	30
아. 14차년도 신규 원표본 조사 설계	33

2. 가중치 조정	35
가. 재정패널 조사 가중치 산출의 특성	35
나. 1차년도(2008년) 조사 가중치	36
다. 2차년도(2009년) 조사 가중치	37
라. 3차년도(2010년) 조사 가중치	40
마. 4차년도(2011년) 조사 가중치	41
바. 5차년도(2012년) 조사 가중치	43
사. 6차년도(2013년) 조사 가중치	44
아. 7차년도(2014년) 조사 가중치	46
자. 8차년도(2015년) 조사 가중치	48
차. 9차년도(2016년) 조사 가중치	50
카. 10차년도(2017년) 조사 가중치	52
타. 11차년도(2018년) 조사 가중치	54
파. 12차년도(2019년) 조사 가중치	56
하. 13차년도(2020년) 조사 가중치	58
거. 14차년도(2021년) 조사 가중치	60
3. 가중치 사용방법	62
III. 일반적 사항	65
1. 데이터 파일	65
2. 변수명	66
3. 가구 고유번호(HID) 및 가구월 고유번호(PID) 부여 원칙	69
가. HID	69
나. HID_b	70
다. PID	70
4. 변수값	72
가. 일반 변수값	72
나. 금액 변수	74
5.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74

가. 수집 대상 증빙서류	74
나. 수집 정보의 데이터화	75
다. 조사 차수별 증빙서류 수집 현황	75
IV. 설문 문항 가이드	81
1. 설문 구성	81
2. 1~14차년도 설문 특이사항 비교	87
가. 1차년도	87
나. 2차년도	87
다. 3차년도	88
라. 4차년도	88
마. 5차년도	89
바. 6차년도	90
사. 7차년도	91
아. 8차년도	91
자. 9차년도	92
차. 10차년도	93
카. 11차년도	93
타. 12차년도	95
파. 13차년도	96
하. 14차년도	96
3. 응답 단위	97
4. 측정기준 시점	98
V. 설문 항목별 유의사항	101
1. 가구용 설문	101
가. 가구 기본 현황	101
나. 주택 및 자동차·오토바이 보유 현황	107
다. 가계 지출 현황	111

라. 타 가구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120
마. 상속	122
바. 중여	123
사. 복지현황	124
아. 자산 및 부채 현황	128
자. 환급금 및 정부보조금 현황	132
2. 가구원용 설문	135
가. 조사 적격 가구원 선정	135
나. 경제활동	136
다. 연금·보험 소득	137
라. 정부지원 현금 소득	138
마. 연간 소득	138
바. 연금·보험관련 지출 현황	141
사.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143
아. 소득세 유형 및 소득·세액 공제 현황	144
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4차년도 부가 조사)	145
차. 직업 이력(6차년도 부가 조사)	146
카. 가구원 의식 조사(9차년도 이후 계속 조사)	147

I

재정패널 조사 소개

1~15차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User's guide

I . 재정패널 조사 소개

1. 조사 배경 및 목적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 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기획된 재정패널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정패널 조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면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년 단위 분석과는 달리 패널 데이터를 통한 연간분석을 시행하여 조세와 재정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조세, 재정 관련 통계의 경우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주기가 단기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패널 조사를 통해 국가통계에 준하는 패널 데이터가 종단면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됨으로써 조세, 재정 관련 통계 인프라가 재편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연구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조세, 재정분야의 특성상 상당 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 재정패널을 통해 그동안 데이터의 부재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학문과 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2. 조사 대상

재정패널 조사는 제주도 및 도서지역¹⁾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가구 단위 조사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조사' 영역과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 조사'로 나뉜다.

가. 가구 조사

재정패널 조사의 기본 조사 단위는 가구이며, 매년 추적하여 조사하는 원표본 가구와 원표본 가구에서 분가하여 발생한 분가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원표본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패널 조사는 전국 조사이지만 조사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 및 도서지역과 특수시설 거주자는 조사 모집단에서 제외되었다.

1) 원표본 가구²⁾

○ 정의

-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성공한 5,010가구(1차년도 추출 원표본)와 2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추가표본으로 조사에 성공한 620가구(2차년도 추출 원표본)를 원표본 가구라 정의하며, 전체 원표본 가구는 5,634가구이다.

○ 원표본의 구성

- 지역별 원표본 구성은 <표 I -1>과 같으며, 지역의 규모에 따라 원표본 가구 수가 배정되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원표본 가구는 전체의 22.7%를 차지하며, 경기는 17.8%, 나머지 지역은 2%~7%의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I -1> 지역별 원표본 가구 수

(단위: 가구)

지역구분	동부	읍면부	합계
전국	4,738	896	5,634 (100.0%)
서울	1,280	-	1,280 (22.7%)
부산	419	10	429 (7.6%)
대구	286	28	314 (5.6%)
인천	274	12	286 (5.1%)
광주	199	-	199 (3.5%)
대전	201	-	201 (3.6%)
울산	132	21	153 (2.7%)
경기	849	152	1,001 (17.8%)
강원	137	48	185 (3.3%)
충북	139	61	200 (3.5%)
충남	120	101	221 (3.9%)
전북	185	88	273 (4.8%)
전남	136	126	262 (4.7%)
경북	172	142	314 (5.6%)
경남	209	107	316 (5.6%)

2) 원표본 가구의 정의는 4차년도 이후 변동되어 현재와 같은 정의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가구 고유번호(HID)

- 가구는 각 가구마다 고유번호(HID)를 부여하였으며, HID를 이용하여 1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 2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 분가 가구를 구분 할 수 있다.
- 1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는 HID01에 ID가 부여되어 있으며, 10000번대의 HID가 부여되어있고, 2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는 HID01에는 ID가 없고, HID02 부터 ID가 부여되어 있으며, 90001~94999 사이의 번호를 갖는다.

2) 가구 조사 응답자(가구주)

○ 가구 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이다.

○ 가구주 정의

- 재정패널 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주란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현재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가구를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 가구주 선택

- 가구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연장자인 가구원을 가구주로 간주하고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남편을 가구주로 간주하였다.

○ 가구주 변경

- 가구주의 실직, 소득감소, 분가 등의 사유로 가구주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가구주를 기준으로 다른 가구원들과의 관계가 수정된다. 따라서 가구주와의 관계는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 분가 가구

○ 분가 가구는 원표본 가구원의 분가로 새롭게 형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 분가 가구 발생사유

- 혼인, 이혼, 학업 및 진학, 직장(주말부부³⁾ 포함) 등의 사유로 원표본 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 분가한 가구원을 추적하여 신규 가구로 조사를 진행한다.

○ 분가 가구 인정기준

- 원표본 가구의 원가구원이 분가한 경우만 인정한다.
- 즉, 가구가 최초로 추출되었을 당시 해당 가구에 거주하였던 가구원이 분가한 경우에만 추적하여 조사한다.
- 분가한 경우 추적하여 조사하는 가구원은 1차년도 구축된 5,014가구 및 2차년도 구축 620가구의 최초 가구원이다.

○ 분가 시점

- 조사 대상년도 6월 30일 이전과 7월 1일 이후 분가 가구가 생성되었는지 판단한다. 7월 1일 이후 생성된 것이라면, 분가 가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원표본 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원의 경제상황은 원표본 가구에서 조사하며, 6월 30일 이전에 분가하여 생성된 것이라면, 신규 분가 가구의 가구원으로 판단하여 분가한 가구를 추적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 7월 1일 이후 분가 가구

- 차후년도 조사를 위해 분가 가구를 찾아가 가구원 현황만 조사하며, 데이터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 분가 가구 고유번호(HID)

- 분가 가구는 2차년도 이후 데이터에서 20001번~84999번⁴⁾ 사이의 HID가 부여되어 있다.

3) 6개월 이상 직장의 이유로 주중에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주말 부부의 경우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관사 등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분가 가구로 인정하여 추적 조사한다. 단, 기숙사나 관사 등 무상 거주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한다.

4) 가구 고유번호(hid) 부여기준은 65페이지 ID 부여 원칙을 참고

4) 14차 신규 원표본 가구

○ 신규표본 추출

- 재정패널 조사 원표본에 대해 13년에 걸쳐 추적조사가 진행되어 이탈 누적으로 인해 표본의 마모가 진행되고 있어 14차 조사에서 기존패널의 대표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신규패널을 4,025개 추가로 구축하고자 했다.
- 신규패널의 표집틀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와 2018년 이후 신축아파트 조사구이며,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 유형(일반/아파트)의 다단계 충화 후 집락 계통 추출법을 활용해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 신규표본의 구성

- 신규표본 조사 결과, 목표 표본 수 대비 10개 가구가 더 표집되어 총 4,035가구가 조사 완료되었다.

<표 1-2> 지역별 신규표본 가구 수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신축아파트 조사구	합계
	동부		읍면부			
지역 특성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전국	1,540	1,764	400	205	126	4,035 (100%)
서울	445	313	-	-	10	768 (19.0%)
부산	130	140	10	10	10	300 (7.4%)
대구	90	90	10	15	6	211 (5.2%)
인천	105	111	10	10	10	246 (6.1%)
광주	50	100	-	-	5	155 (3.8%)
대전	55	85	-	-	5	145 (3.6%)
울산	35	50	10	10	5	110 (2.7%)
경기	285	385	65	45	25	805 (20.0%)
강원	40	55	25	15	5	140 (3.5%)
충북	40	50	25	15	5	135 (3.3%)
충남	35	55	45	20	5	160 (4.0%)
전북	50	85	25	10	10	180 (4.5%)
전남	40	55	50	10	5	160 (4.0%)
경북	60	60	65	15	5	205 (5.1%)
경남	70	85	50	20	10	235 (5.8%)
세종	10	45	10	10	5	80 (2.0%)

○ 가구 고유번호(HID)

- 14자년도 신규패널 구축으로 추가된 가구의 HID는 85001~89999 사이에서 부여되었다.

나. 가구원 조사

1) 가구원의 정의

○ 가구원은 조사 대상년도에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 가구원 정의 시점

- 가구원 변동(신규 또는 이탈)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여부를 판단한다.
- 신규 가구원(입양, 혼인, 그 외 합가)의 경우 6월 30일 이전에 해당 가구로 전입하였다면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반대로 이탈 가구원(사망, 이혼 등)의 경우 7월 1일 이후에 분가(또는 사망)하였다면 가구원으로 인정한다.
- 단, 출생의 경우 7월 1일 이후 출생하였더라도 가구원으로 인정한다.
- 이탈 가구원 중에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군입대, 수용시설 입소, 해외 유학 등)가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6월 30일 이전에 분가하였다면 가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비동거이나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6개월 이상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2차 조사부터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대학원생은 미포함), 원양어선 및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가족⁵⁾인 경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구원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5)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직장의 이유로 주중에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주말 부부)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관사 등 무상거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한다. 다만, 별도의 거주지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분가로 인정하여 추적 조사한다.

○ 조사 차수별 가구원 현황

- 전체 조사 성공 가구(원표본 가구+분가 가구) 중 비동거 상태로 분류되는 가구원 수는 1차년도 153명, 2차년도 178명, 3차년도 90명, 4차년도 52명, 5차년도 85명, 6차년도 171명, 7차년도 158명, 8차년도 148명, 9차년도 99명, 10차년도 126명, 11차년도 113명, 12차년도 88명, 13차년도 190명, 14차년도 320명, 15차년도 297명이다.

<표 1-3> 조사 차수별 가구원(동거, 비동거)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조사 성공 가구	가구원 수		
		합계	동거	비동거
1차년도	5,014	14,904	14,751	153
2차년도	5,039	15,318	15,140	178
3차년도	4,830	14,672	14,582	90
4차년도	4,778	14,432	14,380	52
5차년도	4,740	14,157	14,072	85
6차년도	4,756	14,138	13,967	171
7차년도	4,807	13,984	13,826	158
8차년도	4,819	13,787	13,639	148
9차년도	4,832	13,524	13,425	99
10차년도	4,790	13,237	13,111	126
11차년도	4,770	12,963	12,850	113
12차년도	4,765	12,795	12,707	88
13차년도	8,792	23,127	22,937	190
14차년도	8,798	22,500	22,179	320
15차년도	8,784	22,322	22,025	297

○ 가구원 여부 변수

- 'W__MEM__' 변수로 '① 가구원', '② 비가구원'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14차년도 1번 조사 대상자의 가구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변수는 W14MEM01로 ①번 값을 갖는다면, 해당 가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동거 가구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비가구원의 조사제외

- 비가구원은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서 모두 제외되도록 한다. 따라서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구원 고유번호(PID)도 부여되지 않는다.
- 다만, 다음년도 조사를 위해 가구원 인적사항(성별, 생년월, 가구주와의 관계 등)까지는 조사하여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다. 분석에 있어서는 가구원 인적사항이 있더라도 PID가 없는 가구원은 제외하기를 권장한다.

○ 가구원 고유번호(PID)

- 가구원에게는 주민번호와 동일한 성격의 가구원 고유번호(PID)를 부여하였으며, HID를 이용하여 총 7자리 숫자⁶⁾로 부여되어 있다.
- 가구원 데이터에서는 PID를 기준으로 조사 결과가 입력되어 있다.

2) 가구원 조사 대상

○ 만 15세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의 정의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1백만 원 이상), 연금/보험소득, 기타소득, 정부 현금보조금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연금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 다만, 연간 1백만 원 미만의 소득(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이나, 용돈만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소득 활동의 정의

-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했던 경우 이러한 활동을 소득 활동으로 정의하여 가구원 조사에 응답대상이 되도록 한다.

6) 가구원 고유번호(pid) 부여기준은 65페이지 ID 부여 원칙을 참고

- 또한,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4차년도 조사부터 소득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 활동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주당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도운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3) 가구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만 15세 미만 가구원
-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용돈)이 유일한 소득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유일한 소득인 가구원
-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 등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미만으로 발생한 가구원



3. 실사과정

가. 조사 기간

- 조사 주기

- 1년

- 현장실사 시점

- 종합소득신고자 신고가 끝나는 5월부터 9월말까지

나. 조사 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 조사방법

-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 조사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다. 조사 기관

- 입찰 과정을 거쳐 사회조사 전문 기관인 입소스코리아가 실사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라. 조사 일정

<표 I -4> 연간 조사 일정

일정	조사원 교육	조사 사전 안내	현장 실사	조사 결과 검증 및 자료 정제
내용	4월 말	4월 초	5월~7월	8월~12월

4. 조사 결과

가. 1~15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

○ 조사 성공 가구

- 1~15차년도까지 각 차수별로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표 I-5>와 같다.
- 원표본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추출된 5,634가구를 의미하며, 분가 가구는 2차년도 이후 원표본 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롭게 형성되어 조사에 성공한 가구를 의미한다.
- 신규표본 가구는 14차년도에 추출된 가구를 의미한다.
- 통합표본은 14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기준 원표본 가구, 분가 가구, 신규표본 가구 그리고 15차년도 대체추출한 가구가 포함된 9,318가구를 의미한다.
- 분가 가구는 조사 대상년도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구가 지속되어 온 경우 조사하며, 6개월 미만 가구는 그 다음해부터 조사 대상 가구에 포함된다.

○ 원표본 유지율

- 원표본 가구(1차년도 5,014가구, 2차년도 620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비율을 원표본 유지율이라 한다.
- 15차년도 기준, 5,634가구 중 3,870가구의 조사가 성공하여 원표본 유지율은 68.7%이다.

○ 유효 원표본 유지율

- 유효 원표본 유지율은 원표본 가구 중 사망 및 해외이민의 사유로 가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가구들을 분모에서 제외한 후 산출한 조사 성공률이다.
- 15차년도 기준, 조사가 가능한 원표본 가구는 5,297가구 중 3,870가구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유효표본 유지율은 73.1%이다.

○ 통합표본 유지율

- 통합표본 가구(14차년도에 조사 성공한 기준 원표본 3,480가구, 분가표본 783가

구, 신규 원표본 4,035가구, 15차 대체표본 520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비율을 통합표본 유지율이라 한다.

- 15차년도 기준, 통합표본 유지율은 93.1%(9,318가구 중 8,672가구 성공)이다.

○ 유효 통합표본 유지율

- 유효 통합표본 유지율은 유효 통합표본 가구 중 소멸 가구를 제외한 후 산출한 조사 성공률이다.
- 15차년도를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통합표본 가구는 9,281가구 중 8,672가구 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유효표본 유지율은 93.4%이다.



<표 1-5> 조사 성공 가구

(단위: 가구, %)

조사 차수	조사 성공 가구			원표본 유지율		통합표본 유지율	
	원표본	통합표본	분가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 유지율 ¹⁾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 유지율 ¹⁾
1차년도	5,014		-	100.0	100.0		
2차년도	5,016		23	89.0	89.4		
3차년도	4,747		83	84.3	84.8		
4차년도	4,615		163	81.9%	82.6		
5차년도	4,500		240	79.9	80.8		
6차년도	4,451		305	79.0	79.9		
7차년도	4,426		381	78.6	79.7		
8차년도	4,385		434	77.8	79.6		
9차년도	4,328		504	76.8	79.5		
10차년도	4,236		554	75.2	78.3		
11차년도	4,157		613	73.8	77.1		
12차년도	4,090		675	72.6	76.1		
13차년도	4,005		757	71.1	75.0		
14차년도	3,948	8,798	815	70.1	74.1	100.0	100.0
15차년도	3,870	8,672	879	68.7	73.1	93.1	93.4

주: 1) 유효표본 유지율

- 2차년도: 소멸 가구(사망/해외이민)를 제외한 5,609가구 기준
- 3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600가구 기준
- 5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569가구 기준
- 7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553가구 기준
- 9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441가구 기준
- 11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394가구 기준
- 13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337가구 기준
- 15차년도: (원)소멸 가구를 제외한 5,297가구 기준/(통) 소멸 가구 제외한 9,281가구 기준
- 4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585가구 기준
- 6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574가구 기준
- 8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510가구 기준
- 10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412가구 기준
- 12차년도: 소멸 가구를 제외한 5,373가구 기준
- 14차년도: (원)소멸 가구를 제외한 5,325가구 기준

나. 차수별 응답 가구

1) 1차년도

○ 가구

- 2008년에 실시된 1차년도 최초 표본의 목표 가구는 5,010가구였으나 실제 실

사결과 이보다 약간 많은 5,014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가구원 조사는 총 6,919명에 대해서 조사되었다.

2) 2차년도

○ 가구

- 2009년에 실시된 2차년도 조사 결과, 1차년도 추출 원표본 5,014가구 중 618가구가 탈락하고, 신규 분가한 23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된 620개의 원표본 가구를 포함하여 총 5,039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5,039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095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3) 3차년도

○ 가구

- 2010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5,634 가구 중 4,747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67가구, 3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16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830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830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6,981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4) 4차년도

○ 가구

- 2011년에 실시된 4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615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134가구, 4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29가구에 대한 조사

가 완료되어 총 4,778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778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861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 그 중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가구원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조사된 만 20~39세 기혼 여성 및 배우자는 645명이다.

5) 5차년도

○ 가구

- 2012년에 실시된 5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500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211가구, 5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29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740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740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298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6) 6차년도

○ 가구

- 2013년에 실시된 6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451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276가구, 6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29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756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756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380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7) 7차년도

○ 가구

- 2014년에 실시된 7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426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345가구, 7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36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807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807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559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8) 8차년도

○ 가구

- 2015년에 실시된 8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385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399가구, 8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35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819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819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586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9) 9차년도

○ 가구

- 2016년에 실시된 9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328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466가구, 9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38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832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832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809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10) 10차년도

○ 가구

- 2017년에 실시된 10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236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517가구, 10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37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790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790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865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11) 11차년도

○ 가구

- 2018년에 실시된 11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157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613가구, 11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30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770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770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7,965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12) 12차년도

○ 가구

- 2019년에 실시된 12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090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642가구, 11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33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765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4,765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8,010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13) 13차년도

○ 가구

- 2020년에 실시된 13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4,005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722가구, 12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35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762가구가 조사되었다.

- 13차년도에는 4,030가구를 신규 조사하였으나 이 가구에 대하여 더 이상 추적)조사하지 않는다.

- 가구원

- 8,792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14,759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14) 14차년도

- 가구

- 2021년에 실시된 14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3,948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783가구, 13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3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763가구가 조사되었다.

- 14차년도에는 4,030가구가 신규 표집되었으며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가구원

- 8,798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14,841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15) 15차년도

- 가구

- 2022년에 실시된 15차년도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중 3,870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고, 분가 가구 중 816가구, 14차년도 신규 분가 가구 63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총 4,749가구가 조사되었다.

- 신규표본 가구의 경우 3,515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대체표본 520가구가 추출되어 총 4,035가구가 조사되었다.

- 가구원

- 8,784가구 중 가구원 조사는 총 14,897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7) II. 표본설계와 가중치 28페이지 내용 참조

다. 계속 응답 가구

○ 기존 원표본 계속 응답 가구 수

- 계속 응답 가구는 종단분석에서 활용되는 가구이다. 1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모든 차수에서 응답한 가구는 3,142가구(62.7%)이다.
- 1차년도부터 계속 응답 가구의 비율은 2차년도에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표본 탈락 현상은 타 패널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재정패널 조사는 5,000가구 이상의 원표본 가구를 유지하고자 2차년도 조사 당시 탈락된 표본 수만큼의 대체 표본을 추출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로써 구축 된 2차년도 구축 원표본 가구는 620가구로, 이 가구 중 15차년도까지 계속 응답한 가구는 428가구(69.0%)이다.

<표 1-6> 기존 원표본 계속 응답 가구 수

(단위: 가구,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차 구축	5,014 (100.0)	4,396 (87.7)	4,122 (82.2)	3,954 (78.9)	3,838 (76.5)	3,754 (74.9)	3,697 (73.7)	3,629 (72.4)	3,564 (71.1)	3,488 (69.6)
2차 구축		620 (100)	575 (92.7)	541 (87.3)	519 (83.7)	509 (82.1)	501 (80.8)	493 (79.5)	486 (78.4)	477 (76.9)
전체		5,016 (100.0)	4,697 (93.6)	4,495 (89.6)	4,357 (86.9)	4,263 (85.0)	4,198 (83.7)	4,122 (82.2)	4,050 (80.7)	3,965 (79.0)
구분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차 구축	3,423 (68.3)	3,357 (67.0)	3,262 (65.1)	3,201 (63.8)	3,142 (62.7)					
2차 구축	465 (75.0)	459 (74.0)	448 (72.3)	437 (70.5)	428 (69.0)					
전체	3,888 (77.5)	3,816 (76.1)	3,710 (74.0)	3,638 (72.6)	3,570 (71.2)					

주: 계속 응답 가구에는 1차년도 추출 원가구, 2차년도 추출 원가구만 포함하도록 하며, 1차년도 이후 분기한 가구의 경우 계속 응답 가구에 포함하지 않았음.

○ 통합 표본 계속 응답 가구 수

- 14차년도 구축된 통합 표본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응답한 가구의 경우, 통합 패널 종단면 가중치가 부여된다. 14차에 조사 성공한 가구 및 15차에 구축한 대체표본을 포함한 총 9,318가구 중

<표 I-7> 통합 표본 계속 응답 가구 수

(단위: 가구, %)

구분	14차	15차
14차 조사성공	8,798 (100)	8,152 (92.7)
15차 대체표본		520 (100)
전체		9,318 (100)

주: 통합 표본계속 응답 가구는 14차에 조사 성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라. 설문지 응답자

1) 가구 설문지

○ 응답자 비중

-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세대주의 의미와 관계없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가구원을 가구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구 설문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 등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하도록 하여, 대체로 가구주의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
- 15차년도 조사의 가구 설문지 응답자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주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는 52.3%이며,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한 경우는 45.1%로, 가구 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구원들의 응답 비율이 높아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1-8> 가구 설문지 응답자 비중

(단위: 가구)

구분	1차	2차 ¹⁾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전체 응답 가구 수	5,014	5,039	4,830	4,778	4,740	4,756	4,807	4,819	4,832	4,790	
가구주 본인	49.7%	47.8%	46.3%	46.3%	48.3%	47.4%	47.4%	48.7%	49.2%	49.1%	
가구주 배우자	46.4%	48.7%	50.0%	50.5%	49.0%	49.8%	49.5%	48.7%	48.2%	48.0%	
가구주의 자녀	2.3%	2.1%	2.3%	1.8%	1.4%	1.5%	1.5%	1.2%	1.4%	1.5%	
그 외 ²⁾	1.7%	1.4%	1.4%	1.4%	1.3%	1.4%	1.6%	1.4%	1.3%	1.2%	
구분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전체 응답 가구 수	4,770	4,765	8,792	8,798	8,784						
가구주 본인	49.5%	50.0%	52.8%	52.8%	52.3%						
가구주 배우자	47.2%	46.7%	45.1%	44.6%	45.1%						
가구주의 자녀	1.6%	1.5%	1.4%	1.3%	1.3%						
그 외 ²⁾	1.8%	1.9%	0.8%	2.3%	1.3%						

주: 1) 전체 조사 성공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결과임

2)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및 기타 친인척 등

2) 가구원 설문지

○ 응답자 비중

- 가구원 설문지에서 본인이 직접 응답한 비율은 15차년도 기준 76.8%이었으며, 소득을 관리하는 다른 가구원이 대리 응답한 경우는 23.2%이었다.

<표 1-9>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 비중

(단위: 명)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전체 응답 가구원 수	6,919	7,095	6,981	7,861	7,298	7,380	7,559	7,586	7,809	7,865	
본인 응답	60.8%	57.8%	52.2%	56.9%	55.1%	55.4%	55.9%	57.9%	62.9%	65.6%	
대리 응답	39.2%	42.2%	47.8%	43.1%	44.9%	44.6%	44.1%	42.1%	37.1%	34.4%	
구분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전체 응답 가구원 수	7,965	8,010	14,759	14,841	14,897						
본인 응답	66.6%	70.1%	72.1%	75.2%	76.8%						
대리 응답	33.4%	29.9%	27.9%	24.8%	23.2%						

○ 가구원 설문의 대리 응답

- 가구원 조사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 본인을 직접 만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재 시 다른 가구원의 월급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가구원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만 대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타인이 대리 응답하더라도 가구원 설문 내용 중 본인의 의식을 조사하는 파트는 유선 조사 또는 팩스 조사 등의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본인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H

표본설계와 가중치

1~15차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User's guide

II. 표본설계와 가중치

1. 표본설계

가. 모집단

-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
 -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제주도 및 도서 산간지역 제외되었다.

나. 표본틀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10%는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외부 통계작성 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
- 2005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 정보(추가 표집틀)
 - 재정패널 조사의 구축 시점(2008년)과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작성 시점(2005년) 간에 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모집단의 특성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가적인 표집틀을 구성하였다.

다. 1차년도 표본 추출

- 추출 방법
 - 2단계 집락추출법(총화이단계추출법)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 단위로 하여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추출 시 활용한 변수

-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 읍면/동부, 일반/아파트 변수가 자료의 충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충내의 조사구 정렬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조사구 내의 가구 연건평의 최빈값을 사용하였다.

○ 추가 표본틀의 활용

- 2005년 이후 신축아파트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표본 추출을 위한 조사구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05년 11월 이후 입주한 아파트를 60~80가구 정도씩 끓어 일종의 가상적인 조사구를 구성하고, 구성된 조사구를 다시 충화하여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충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을 사용하였고, 정렬변수로는 시군구와 대표평수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가구 추출률과 비슷한 추출률이 유지되도록 시도별로 표본 신규아파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과대표집

-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의 조세 내역·소득공제 내역뿐만 아니라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혜택을 파악하는데도 조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저소득계층은 그 수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의 표본 추출로는 원하는 만큼의 표본을 얻어내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득층에서 300가구, 저소득층에서 300가구 정도를 추가로 표집하고자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구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60개의 조사구에 해당 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조사구에서 추출하는 가구 수는 5개이며 마찬가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와 과대표집 조사구도 역시 한 개의 조사구에서 5개 가구를 추출하였다.

라. 1차년도 표본설계 가구 응답률 산출과정 및 결과

○ 적격표본

- 유효표본 5,014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추출한 총 가구 리스트 수는 10,015개 이었으며, 총 가구리스트 중 빈집·철거 등으로 가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101건, 2008년 이후 새로 분가한 신규가구가 93건으로 파악되어, 최종적으로 적격표본은 9,821개 가구로 조사되었다.

○ 응답률

- 적격표본 가구 중 조사를 거절한 사례가 3,286건, 가구원 전체가 부재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기타인 경우가 1,521건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무응답 건수는 4,807건으로 집계되었다.
- 총 적격표본 대비 응답률은 51.1%로 산출되었고 시도별 응답률은 43.1%에서 66.9%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도시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반면 도 지역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 지역별 표본설계 가구 응답률 현황

(단위: 가구)

지역	총 리스트	부적격 표본			적격표본 (리스트- 부적격) /중단	무응답			완성표본 (적격표본 -무응답)	응답률 (완성표본/ 적격표본)
		빈집/ 철거	신규 가구	계		조사 거절	부재중 /기타	계		
전국	10,015	101	93	194	9,821	3,286	1,521	4,807	5,014	51.1%
서울	2,495	16	21	37	2,458	952	431	1,383	1,075	43.7%
부산	806	7	8	15	791	288	118	406	385	48.7%
대구	603	8	5	13	590	211	94	305	285	48.3%
인천	588	7	10	17	571	226	99	325	246	43.1%
광주	322	2	2	4	318	74	59	133	185	58.2%
대전	323	3	6	9	314	96	37	133	181	57.6%
울산	323	3	4	7	316	115	61	176	140	44.3%
경기	1,945	15	17	32	1,913	715	322	1,037	876	45.8%
강원	299	2	3	5	294	87	32	119	175	59.5%
충북	269	3	2	5	264	59	34	93	171	64.8%
충남	323	5	4	9	314	63	46	109	205	65.3%
전북	392	7	4	11	381	83	43	126	255	66.9%
전남	402	8	2	10	392	86	51	137	255	65.1%
경북	460	9	2	11	449	115	44	159	290	64.6%
경남	465	6	3	9	456	116	50	166	290	63.6%

마. 2차년도 표본추출

1) 2차년도 표본추출 배경

○ 개체 무응답(Unit non-response) 발생

- 조사 진행 과정에서 원표본 가구가 조사 참여에 거절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몇 차례 방문을 해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어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체 무응답이라고 한다.
- 표본조사에서 개체 무응답의 빈도가 높을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패널 조사는 2차년도 조사 진행 시 많은 수의 개체 무응답이 발생하는 성향이 있으며, 재정패널 조사의 경우 약 600가구 가량의 개체 무응답이 2차년도 조사 당시 발생하였다.

○ 유효표본의 크기 유지

- 재정패널 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종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횡단면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의 도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확보가 요구되며, 최초에 추출한 원표본이 탈락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 저하의 우려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효표본의 크기를 표본설계 시 계획한 5,000여 가구로 유지하기 위해 탈락된 원표본 가구의 수만큼 추가로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 2차년도 원표본 가구 추출 방법

○ 추출방법

- 2차년도 원표본 가구의 추출 방법은 확률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 확률 추출법은 순차적인 대체를 이용한 방법인데, 탈락한 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rightarrow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다.

- 이러한 방식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대체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바. 2차년도 최종 표본 구성

○ 원표본 중 탈락 가구 수

- 1차년도에 추출하여 구축한 가구 중 2차년도 조사당시 방문 시간대와 요일을 달리하여 4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특정한 사유에 의해 조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탈락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탈락한 가구는 총 618가구이다.

○ 원표본 중 탈락 가구 사유

- 탈락한 표본가구의 사유는 강력거절, 주소불명으로 인한 추적 실패, 사망, 해외이민, 기타로 나뉜다. 기타는 병원 및 요양원의 장기 입원 또는 불명의 사유로 장기 부재, 약속 반복 위반, 비정상적 응답자 등의 경우가 포함된다.

○ 2차년도 추출 원표본

- 2차년도 조사 당시 추가 표본추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표본의 수는 전국 5,016 가구이며, 탈락한 618가구에 대한 대체 추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1차년도 추출 탈락 가구 중 2가구가 조사에 추가적으로 협조하여 조사 성공으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2차년도 추출가구의 총 가구는 620가구이다.
- <표 II-2>와 같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차년도 추출가구 대비 약 24% 수준의 탈락이 발생하여 2차년도 추출이 이루어졌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전남은 2.8%로 가장 적은 수준에서 2차년도 추출이 이루어졌다.

<표 II-2 > 2차년도 최종 표본구성

(단위: 가구)

시·도 (2차년도 기준)	1차년도 추출 가구	탈락 표본 가구	탈락 사유별					2차년도 추출 가구	합계
			강력 거절	주소 불명	사망	이민	기타		
전국	4,396	618	392	147	10	15	54	620	5,016
서울	859	204	124	55	-	9	16	205	1,064
부산	339	44	24	6	1	2	11	44	383
대구	256	29	28	1	-	-	0	29	285
인천	206	40	28	8	1	1	2	40	246
광주	169	14	10	3	1	-	0	14	183
대전	162	20	10	8	-	-	2	20	182
울산	129	13	10	3	-	-	0	13	142
경기	762	124	76	34	1	1	12	125	887
강원	164	10	4	4	1	-	1	10	174
충북	144	29	16	7	1	2	3	29	173
충남	186	16	10	4	-	-	2	16	202
전북	238	18	15	2	1	-	0	18	256
전남	250	7	6	-	1	-	0	7	257
경북	266	24	16	7	-	-	1	24	290
경남	266	26	15	5	2	-	4	26	292

사. 13차년도 횡단표본 조사 설계

○ 추출 배경

- 10년 이상 원표본 변동 없이 추적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표본의 마모(panel attrition)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극복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3차년도 조사에서 약 4,000가구의 패널 가구를 신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 13차년도 횡단표본 구축의 특징

- 조사 시점인 2020년 초부터 발현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조사기간 변동 및 조사 거절에 따른 대체 조사구 추출 등의 사유로 13차년도에 구축한 신규 표본은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횡단면 분석에만 활용하기로 결정하였

다.

- 따라서, 13차년도에 구축된 신규 표본은 “13차년도 횡단 표본”이라 명칭하고, 14차년도(2021년)에 구축하는 신규 표본을 횡단 및 종단 분석이 가능하고 계 속 추적 조사하는 “신규 원표본” 가구로 정의한다.

○ 추출 방법

- 2단계 집락추출법(총화이단계추출법)
- 1단계에서 가구의 집락인 조사구를 총화 추출법을 통해 추출하고, 2차로 추출 된 조사구 내에서 가구를 추출하는 표본설계를 사용하였다.

○ 표집틀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와 2018년 이후 신축아파트 조사구

○ 표본의 규모

- 12차까지 진행된 패널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가구 총소득과 가구 경상소득 총액 추정량의 층(시도*동부/읍면부*일반*아파트)별 상대 표준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2008년 패널 구성 시 고려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과대 표집 을 위한 표본설계를 고려하였다.

○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과대표집

- 고소득층에서 300가구, 저소득층에서 300가구 정도를 추가로 표집하고자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II-3> 2020년(13차) 신규 표본 가구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 조사구	합계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전국	1,560 (1,550)	1,753 (1,755)	389 (395)	202 (200)	126 (125)	4,030 (4,025)
서울	487 (485)	289 (290)	-	-	10 (10)	786 (785)
부산	110 (110)	155 (155)	10 (10)	10 (10)	10 (10)	295 (295)
대구	80 (80)	100 (100)	10 (10)	10 (10)	5 (5)	205 (205)
인천	111 (110)	107 (105)	10 (10)	10 (10)	11 (10)	249 (245)
광주	40 (40)	95 (95)	-	-	5 (5)	140 (140)
대전	55 (55)	70 (70)	-	-	5 (5)	130 (130)
울산	35 (35)	50 (50)	10 (10)	10 (10)	5 (5)	110 (110)
세종	10 (10)	45 (45)	10 (10)	10 (10)	-	75 (75)
경기	291 (290)	362 (365)	65 (65)	47 (45)	20 (20)	785 (785)
강원	42 (40)	55 (55)	23 (25)	15 (15)	10 (10)	145 (145)
충북	40 (40)	50 (50)	25 (25)	15 (15)	5 (5)	135 (135)
충남	35 (35)	55 (55)	45 (45)	20 (20)	10 (10)	165 (165)
전북	62 (60)	110 (110)	28 (30)	10 (10)	5 (5)	215 (215)
전남	37 (35)	55 (55)	43 (45)	10 (10)	5 (5)	150 (150)
경북	55 (55)	60 (60)	65 (65)	15 (15)	10 (10)	205 (205)
경남	70 (70)	95 (95)	45 (45)	20 (20)	10 (10)	240 (240)

* 조사 완료 표본 수 (괄호 안은 조사 설계 목표 표본 수)

아. 14차년도 신규 원표본 조사 설계

○ 추출 배경

- 재정패널 조사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구축한 원표본 가구를 매년 추적하여 조사하는 패널 조사로, 13차년도 조사까지 10년 이상 원표본 변동 없이 추적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표본의 마모(panel attrition) 문제가 야기되었다.
- 표본의 마모는 경우에 따라 표본 대표성 하락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신규패널의 추가 혹은 새로운 코호트의 구성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 이에 재정패널 조사는 표본 마모 문제를 극복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4차년도 조사에서 약 4,000가구의 패널 가구를 신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 추출 방법

- 2단계 집락추출법(총화이단계추출법)
- 1단계에서 가구의 집락인 조사구를 총화 추출법을 통해 추출하고, 2차로 추출 된 조사구 내에서 가구를 추출하는 표본설계를 사용하였다.

○ 표집틀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와 2018년 이후 신축아파트 조사구

○ 표본의 규모

- 12차까지 진행된 패널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가구 총소득과 가구 경상소득 총액 추정량의 층(시도*동부/읍면부*일반*아파트)별 상대 표준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2008년 패널 구성 시 고려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과대 표집 을 위한 표본설계를 고려하였다.

○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과대표집

- 고소득층에서 300가구, 저소득층에서 300가구 정도를 추가로 표집하고자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II-4> 2021년(14차) 신규 원표본 가구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 조사구	합계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전국	1,540 (1,535)	1,764 (1,760)	400 (400)	205 (205)	126 (125)	4,035 (4,025)
서울	445 (440)	313 (310)	-	-	10 (10)	768 (760)
부산	130 (130)	140 (140)	10 (10)	10 (10)	10 (10)	300 (300)
대구	90 (90)	90 (90)	10 (10)	15 (15)	6 (5)	211 (210)
인천	105 (105)	111 (110)	10 (10)	10 (10)	10 (10)	246 (245)
광주	50 (50)	100 (100)	-	-	5 (5)	155 (155)
대전	55 (55)	85 (85)	-	-	5 (5)	145 (145)
울산	35 (35)	50 (50)	10 (10)	10 (10)	5 (5)	110 (110)
경기	285 (285)	385 (385)	65 (65)	45 (45)	25 (25)	805 (805)
강원	40 (40)	55 (55)	25 (25)	15 (15)	5 (5)	140 (140)
충북	40 (40)	50 (50)	25 (25)	15 (15)	5 (5)	135 (135)
충남	35 (35)	55 (55)	45 (45)	20 (20)	5 (5)	160 (160)
전북	50 (50)	85 (85)	25 (25)	10 (10)	10 (10)	180 (180)
전남	40 (40)	55 (55)	50 (50)	10 (10)	5 (5)	160 (160)
경북	60 (60)	60 (60)	65 (65)	15 (15)	5 (5)	205 (205)
경남	70 (70)	85 (85)	50 (50)	20 (20)	10 (10)	235 (235)
세종	10 (10)	45 (45)	10 (10)	10 (10)	5 (5)	80 (80)

○ 응답률

- 총 805개 조사구별로 5개 가구를 계통추출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극히 일부 조사구에서는 조사 거절이나 접촉 실패 등의 사유로 5개 가구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 경우 조사구 특성이 유사한 타 조사구에서 부족한 표본 수만큼 더 채워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초 접촉 시 조사를 거절했던 가구가 뒤늦게 조사에 참여한 사례 등이 더해지면서 최종 표본 수는 4,035개로 확정되었다. 목표 표본 수 대비 10개 가구가 더 표집 되었으나 충별로 조사 완료된 표본 수는 목표 표본 수와 매우 유사하다.

자. 15차년도 표본추출

1) 15차년도 표본추출 배경

○ 개체 무응답(Unit non-response) 발생

- 조사 진행 과정에서 원표본 가구가 조사 참여에 거절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몇 차례 방문을 해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어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체 무응답이라고 한다.
- 표본조사에서 개체 무응답의 빈도가 높을 경우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패널 조사는 추출 후 2번째 조사 진행 시 많은 수의 개체 무응답 이 발생하는 성향이 있다. 14차년도 신규 표본 추출 후 15차년도에서 520개의 개체 무응답이 발생하였다.

○ 유효표본의 크기 유지

- 재정패널 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종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횡단 면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의 도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확보가 요구되며, 최초에 추출한 원표본 이 탈락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 저하의 우려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효표본의 크기를 표본설계 시 계획한 4,000여 가구로 유지하기 위해 탈락된 원표본 가구의 수만큼 추가로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 15차년도 신규 원표본 가구 추출 방법

○ 추출방법

- 15차년도 신규 원표본 가구의 추출 방법은 2차년도와 동일하게 확률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 확률 추출법은 순차적인 대체를 이용한 방법인데, 탈락한 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rightarrow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다.

- 이러한 방식은 14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대체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바. 15차년도 최종 표본 구성

○ 신규 원표본 중 탈락 가구 수

- 14차년도에 추출하여 구축한 가구 중 15차년도 조사 당시 방문 시간대와 요일을 달리하여 4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특정한 사유에 의해 조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탈락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탈락한 가구는 총 520가구이다.

○ 15차년도 추출 원표본

- 14차년도 조사 당시 추가 표본추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표본의 수는 전국 4,035가구이며, 탈락한 520가구에 대한 대체 추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14차년도 추출 탈락 가구 중 15가구가 조사에 추가적으로 협조하여 조사 성공으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15차년도 추출가구의 총 가구는 520가구이다.

2. 가중치 조정

가. 재정패널 조사 가중치 산출의 특성

1) 2차년도 추출 가구에 대한 가중치 부여

○ 종단면 가중치

-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부터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가중치이다. 그러므로 2차년도에 추출된 가구의 경우 종단가중치 부여 대상이 되지 않아 2차년도 이후 계속 응답하였더라도 종단면 가중치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 횡단면 가중치

- 횡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조사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년도의 조사에 참여한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2차년도 추출가구도 해당년도에 조사에 참여하였다면 횡단면 가중치가 부여된다.

2) 가구원 가중치

○ 가구원 가중치 설정 논의

-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는 조사로, 표본 구축을 위한 모집률도 가구를 단위로 하며, 추출도 가구 단위이다. 따라서 가구원 가중치 산출을 위한 모집단 및 추출확률의 계산이 어려운 설정⁸⁾이다. 또한 매년 재정패널의 가구원 조사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점과 실제 가구원 무응답률이 매우 낮아 가구원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가구원 가중치의 별도 산출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따라서 가구 가중치를 먼저 산출하고, 이를 가구원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참고로 재정패널 조사 설계 과정에서 참고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은 가구 가중치와 가구원 가중치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은 각 가구원 가중치를 먼저 산출하고, 각 가구원 가중치의 평균값을 가구 가중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패널이 가구 가중치를 그대로 가구원 가중치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나. 1차년도(2008년) 조사 가중치

1) 표본설계 가중치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

○ 1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인 5,014가구와 2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인 620가구를 합하여, 총 5,634가구에 표본설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1차년도 가중

8) 재정패널은 만15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가 가구원 설문지의 조사 대상이 된다. 만일 가구원에 대한 가중치를 추가로 산출하려고 한다면, 목표 모집단(15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특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다.

치 산출에서는 620개 2차년도 추출 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5,014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조사된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표본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 위 식에서 N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는 h 층의 표본 조사구 수, N_{hi} 는 h 층 조사구 i 의 모집단 가구 수, 그리고 n_{hi} 는 h 층 조사구 i 의 표본 가구 수를 나타낸다.
- 1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표본설계 가중치에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어 진다. 응답률은 r_{hi}/n_{hi} 로 계산되어 지며, r_{hi} 는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응답 가구 수이다. 조사된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na}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times \left(\frac{r_{hi}}{n_{hi}} \right)^{-1} = \frac{N_h}{n_h} \times \frac{N_{hi}}{r_{hi}}$$

2) 레이킹(raking) 가중치 보정

- 산출된 무응답 보정 가구 가중치(w_{hij}^{na})는 다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가구 및 인구 추계 통계를 바탕으로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각 지역별(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 미만/40~49/50~59/60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rak} = w_{hij}^{na} \exp\left(\underline{x}_{hij}' \lambda\right)$$

- 여기서 \underline{x}_{hij} 는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지시변수들로 표현한 벡터이며 λ 는 $\sum w_{hij}^{rak} x_{hij} = t_x$ 의 해이며 t_x 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각 레이킹 변수들의 추계 값을 나타낸다. 레이킹을 통한 가중치의 보정 결과 2008년 추계 자료와의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여 가중치의 최댓값을 9,000으로 제한하였다. 가중치가 9,000을 초과하는 극단 관측치들의 경우 가중치를 9,000으로 조정하고, 레이킹 보정 가중치에서 9,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벤치마킹범주(지역*가구주 성*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내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다. 2차년도(2009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조사의 2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2개년도(2008년과 2009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에 2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과 2009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서 계산되어진다.

-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는 2009년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와 2008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응답 가구의 응답확률을 예측하였다. 2009년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2008년에 작성된 각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를 w_{2008} 이라 표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2009} 라 할 때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중치는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w_{2009} = w_{2008} \times \hat{p}_{2009}^{-1}$$

- 실제 \hat{p}_{2009} 의 예측을 위하여 적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text{가구주성별}\beta_1 + \text{가구원수}\beta_2 \\ + \text{가구주연령}\beta_3 + \text{지역}\beta_4 + \text{가구연간소득총액}\beta_5$$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009년 추계 자료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1차년도에 사용된 레이킹 기법이 사용되었다. 2009년 레이킹을 위하여 지역과 가구주의 성,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2,500으로 제한하였다.

2)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 가구(1차년도 추출 가구, 2차년도 추출 가구)와 분가 가구(2008년 6월 이전 분가)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09년 추계 자료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각 가구 형태별 1단계 가중치 산출을 살펴보면, 먼저 2차년도에 조사된 기존 가구(1차년도 추출 가구, 2차년도 추출 가구)의 경우,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를 사용하고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1단계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무응답 보정 방법은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는 2009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를 사용했으며, 2009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2009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로는 1차년도 추출 가구의 경우 종단면과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다. 2008년 자료가 없는 2차년도 추출 가구는 대응되는 1차년도 추출 가구(2차년도 탈락 가구)의 2008년도 5개 변수(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 연간 소득 총액)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분가 가구의 경우, 분가 사유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분가 사유가 결혼인 경우, 원가구의 당해 연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고 기타 사유의 분가 가구 경우, 원가구의 당해 연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하였다. 또한 분가 사유가 결혼인 35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12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를 조사 성공한 23가구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가 사유가 결혼인 35가구를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 2차년도 무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응답 가구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 기존 가구와 분가 가구의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라. 3차년도(2010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3개년도(2008년~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3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가중치 산출에는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w_{hij}^{na})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2차년도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2010년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2010년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3개년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300으로 제한하였다.

2)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 가구(1차년도 추출 가구, 2차년도 추출 가구), 기존 분가(2008년 6월 이전 분가) 그리고 신규 분가(2008년 7월~2009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0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기존 가구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 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2010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10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2010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 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다. 기존 분가의 경우, 3차년도에 모든 가구가 응답하여 2차년도에 부여한 횡단면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규 분가는 2차년도 분가 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1,700으로 제한하였다.

마. 4차년도(2011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4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4개년도(2008년~2011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4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4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4개년도(2008년~2011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5,000으로 제한하였다.

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 가구(1차년도 추출 가구, 2차년도 추출 가구), 기존 분가(2009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2009년 7월~2010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1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 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률은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1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11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2011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 분가는 2차년도 분가 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4,000으로 제한하였다.

바. 5차년도(2012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5개년도(2008년~2012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5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5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5개년도(2008년~2012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4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8,000으로 제한하였다.

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5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 가구(원 패널 가구, 대체 가구), 기존 분가(2010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2010년 7 월~2011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2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 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 하다. 기존 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2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2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2012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 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신규 분가는 2차년도 분가 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000으로 제한하였다.

사. 6차년도(2013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6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6개년도(2008년~2013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6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6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6개년도(2008년~2013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3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3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연령 범주를 4개(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에서 2개(50세 미만/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2)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6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 가구(원 패널 가구, 추가 가구), 기존 분가(2011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2011년 7 월~2012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3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 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률은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3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3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2013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 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신규 분가는 2차년도 분가 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3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3) 6차년도 종단면, 횡단면 가중치 산출을 위한 레이킹 방안 변경

- 기존 1~5차까지 레이킹 방안을 위하여 고려한 벤치마킹 정보는 지역(제주도 제 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그리고 레이킹 가중치 보정을 통한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차수마다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하여 관측치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 레이킹 방안을 위하여 고려한 벤치마킹 정보 중 가구주의 연령의 범주를 기존의 4개의 범주(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에서 2개의 범주(50세 미만/50세 이상)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4개의 범주를 사용하는 방안보다 가중치의 분포에서 지나치게 큰 관측치가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레이킹 방안의 적용 후 관측치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아. 7차년도(2014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7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7개년도(2008년~2014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5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7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7개년도(2008년~2014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 여부(7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4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최종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6차년도의 분포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2)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7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7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 가구(원폐널 가구, 대체 가구), 기존 분가 가구(2012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 가구(2012년 7월~2013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4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2014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다.
- 신규 분가 가구는 분가 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 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 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 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 수는 6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자. 8차년도(2015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8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8개년도(2008년~2015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8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8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8개년도(2008년~2015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 여부(8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5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최종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7차년도의 분포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2)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8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8차년도(2015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 가구(원폐널 가구, 대체 가구), 기존 분가 가구(2013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 가구(2013년 7월~2014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 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 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 가구 와 기존 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5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2015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신규 분가 가구는 분가 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 사유 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 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 간총소득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 유 신규 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 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 수는 7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차. 9차년도(2016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9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9개년도(2008년~2016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9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9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9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9개년도(2008년~2016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 여부(9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 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6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9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30,000으로 제한하였다.

2) 9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9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9차년도(2016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 가구(원패널 가구, 대체 가구), 기존 분가 가구(2014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 가구(2014년 7월~2015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6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2016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신규 분가 가구는 분가 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 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 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 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횡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 수는 8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카. 10차년도(2017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10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10개년도(2008년~2017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0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10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10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0개년도(2008년~2017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 여부(9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7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0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35,000으로 제한하였다.

2) 10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10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0차년도(2017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 가구(원패널 가구, 대체 가구), 기존 분가 가구(2015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 가구(2015년 7월 ~ 2016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7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2017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신규 분가 가구는 분가 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 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 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 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 수는 9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타. 11차년도(2018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11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11개년도(2008년~2018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1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11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11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1개년도(2008년~2018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 여부(11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8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8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1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35,000으로 제한하였다.

2) 1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11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1차년도(2018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 가구(원패널 가구, 대체 가구), 기존 분가 가구(2016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 가구(2016년 7월 ~ 2017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8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8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2018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신규 분가 가구는 분가 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 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 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 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8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 수는 10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파. 12차년도(2019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12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12개년도(2008년~2019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2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1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12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2개년도(2008년~2019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 여부(11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은 가중치는 201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9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보다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된 1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40,000으로 제한하였다.

2) 1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11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2차년도(2019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 가구(원패널 가구, 대체 가구), 기존 분가 가구(2017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 분가 가구(2017년 7월 ~ 2018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0)를 사용하고, 기존 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다. 기존 가구와 기존 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9년 횡단면 응답 여부 변수(2019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 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신규 분가 가구는 분가 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 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 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 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 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 수는 11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 13차년도(2020년) 조사 가중치

13차년도 재정패널 가중치는 2008년부터 추적한 기존패널만 대상으로 한 종단면 가중치와 2020년에 새로 구축한 신규패널까지 포함한 횡단면 가중치 2종을 산출할 예정이다. 기존패널만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가중치 산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12차년도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 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1단계 보정을 우선 진행하며,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인구 및 가구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2단계 레이킹 보정 과정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재정패널 1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13개년도(2008년~202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020년에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자료의 분석을 위한 횡단면 통합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1) 1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13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3개년도(2008년~2020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기존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 여부(13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 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2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20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기존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60,000으로 제한하였다.

2) 13차년도 횡단면 통합 가중치 산출

- 횡단면 통합 가중치는 기존패널 가구에 2020년에 추가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4,030가구에 부여되었다. 통합 횡단면 가중치가 부여된 총 가구는 8,792 가구이다. 통합 가중치 작성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1단계에서는 2020년에 추가되어 조사된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되었으며, 이 때 각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충화 이단계 집락추출법 하에서 계산된 설계 가중치가 사용되었다. 즉, 각 층 내에서의 조사구 추출률과 추출된 조사구 내 조사된 가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가구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 2단계에서는 기준 가구패널 중 2020년에 조사되어 13차 횡단면 가중치가 계산된 가구와 1단계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신규 가구를 결합하여 기초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사구 층(동부/읍면부, 17개 광역시도, 일반/아파트) 내에서 기존패널의 가구 수와 추가된 가구 수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층 h 에 속한 기존패널의 가구 수를 $n_{old,h}$ 그리고 신규 가구 수를 $n_{new,h}$ 로 정의하면, 해당 층에 속한 기존패널 가구에 부여된 1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는 $n_{old,h}/(n_{old,h} + n_{new,h})$ 을 곱하고, 추가된 가구에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에는 $n_{new,h}/(n_{old,h} + n_{new,h})$ 을 곱하여 기초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가구패널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각 가구에 부여된 이전 가중치를 층 내에서 낮추어서 모집단 가구 수 추정 시 비상식적인 수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며, 또한, 통계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가구 수를 이용하였다.
-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작성된 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13차 횡단면 그리고 종단면 가중치 작성 시 고려한 레이킹 방법을 적용하였다. 레이킹을 위해서는 202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 중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거. 14차년도(2021년) 조사 가중치

14차년도 재정패널 가중치는 2008년부터 추적한 기존패널만 대상으로 한 종단면 가중치와 2021년에 새로 구축한 신규패널까지 포함한 횡단면 가중치 2종을 산출하였다. 기존패널만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가중치 산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13차년도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 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1단계 보정을 우선 진행하며,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인구 및 가구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2단계 레이킹 보정 과정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1) 1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14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4개년도(2008년~2021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기존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 여부(14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 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 총액을 사용했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2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21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기존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60,000으로 제한하였다. 서울 거주, 50세 미만의 여성 가구주, 가구원 수 4인 미만인 층은 가중치가 큰 가구가 많이 분포하여 가중치의 최댓값을 65,000으로 제한하였다.

2) 14차년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산출

- 14차년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는 기존패널 가구에 2021년에 추가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4,035가구에 부여되었다. 통합 횡단면 가중치가 부여된 총 가구는 8,798가구이다. 통합 가중치 작성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1단계에서는 2021년에 추가되어 조사된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되었으며, 이 때 각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충화 이단계 집락추출법 하에서 계산된 설계 가중치가 사용되었다. 즉, 각 층 내에서의 조사구 추출률과 추출된 조사구 내 조사된 가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가구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 2단계에서는 기존 가구패널 중 2021년에 조사되어 14차 횡단면 가중치가 계산된 가구와 1단계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신규 가구를 결합하여 기초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사구 층(동부/읍면부, 17개 광역시도, 일반/아파트) 내에서 기존패널의 가구 수와 추가된 가구 수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층 h 에 속한 기존패널의 가구 수를 $n_{old,h}$ 그리고 신규 가구 수를 $n_{new,h}$ 로 정의하면, 해당 층에 속한 기존패널 가구에 부여된 1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는 $n_{old,h}/(n_{old,h} + n_{new,h})$ 을 곱하고, 추가된 가구에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에는 $n_{new,h}/(n_{old,h} + n_{new,h})$ 을 곱하여 기초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가구패널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각 가구에 부여된 이전 가중치를 층 내에서 낮추어서 모집단 가구 수 추정 시 비상식적인 수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며, 또한, 통계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가구 수를 이용하였다.
-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작성된 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14차 횡단면 그리고 종단면 가중치 작성 시 고려한 레이킹 방법을 적용하였다. 레이킹을 위해서는 202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 중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너. 15차년도(2022년) 조사 가중치

15차년도 재정패널 가중치는 2008년부터 추적한 기존 패널만 대상으로 한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 2021년에 새로 구축한 신규 패널까지 포함한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 총 4종을 산출하였다. 기존 패널만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가중치 산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15차년도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 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1단계 보정을 우선 진행하며,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 인구 및 가구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2단계 레이킹 보정 과정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1) 1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 15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5개년도(2008년~2022년) 모두 응답한 기존 패널의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기존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15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2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22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기존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79,000으로 제한하였다.

2) 1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 15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5차년도(2022년) 조사에 응답한 기존 패널의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20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20년 7월 ~ 2021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2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 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22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22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 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 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2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14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3) 15차년도 종단면 통합 가중치 산출

- 종단면 통합 가중치는 14차와 15차(2021, 2022)년도에 모두 응답한 통합 패널의 가구에 부여되며, 21년도에 부여된 기초 통합 가중치에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과 202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은 기존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유사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 변수는 응답여부(2021~2022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유사하게 2021년도에 조사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2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22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기존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4) 15차년도 횡단면 통합 가중치 산출

- 횡단면 통합 가중치는 2022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통합 패널의 가구에 부여되었다. 통합 횡단면 가중치가 부여된 가구는 총 8,784가구이다. 통합 가중치 작성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 1단계에서는 통합 패널의 가구를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가구로 나누어 초기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기존 패널 가구는 15.2절에서 작성된 15차년도 횡단면 가

중치를 초기 가중치로 부여하였고, 신규 패널 가구는 2021년 총화 이단계 집락 추출법 하에서 계산된 설계 가중치를 초기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2022년도 조사에서는 신규 패널에 큰 규모의 패널 탈락(520가구)이 발생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대체 가구로 520가구가 새로 조사되었고, 따라서 해당 대체 가구의 경우 대응되는 탈락 가구의 설계 가중치를 초기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또한 신규 패널의 가구에서 신규 분가한 가구의 경우 분가 전 원가구의 설계 가중치를 부여되어,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원가구 설계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 2단계에서는 기존 패널 가구와 신규 패널 가구의 가중치를 결합하여 기초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사구 총(동부/읍면부, 17개 광역시도, 일반/아파트) 내에서 기존 패널의 가구수와 신규 패널의 가구수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총 h 에 속한 기존 패널의 가구수를 $n_{old,h}$ 그리고 신규 패널의 가구수를 $n_{new,h}$ 로 정의하면, 해당 총에 속한 기존 패널 가구에 부여된 1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는 $n_{old,h}/(n_{old,h} + n_{new,h})$ 을 곱하고, 신규 패널 가구에 부여된 설계 가중치에는 $n_{new,h}/(n_{old,h} + n_{new,h})$ 을 곱하여 기초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가구패널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각 가구에 부여된 이전 가중치를 총 내에서 낮추어서 모집단 가구 수 추정 시 비상식적인 수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며, 또한, 통계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가구 수를 이용하였다.
-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작성된 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15차년도 횡단면 그리고 종단면 가중치 작성 시 고려한 레이킹 방법을 적용하였다. 레이킹을 위해서는 202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 중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3. 가중치 사용방법

재정패널 조사는 횡단 가중치와 종단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중치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 가구 자료는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고, 가구원 자료는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단, 가구원 가중치는 경제활동을 한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부여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분석해야하며, 분석대상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가중치가 달라진다. 재정패널 조사 자료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가중치 사용을 권장한다.

○ 15차년도 자료만 분석

- 분석대상: 15차년도 응답한 원표본 및 신규표본 가구 또는 가구원
- 가중치: 15차년도 통합 횡단면 가중치

○ 1~15차년도 자료 추이 분석

- 분석대상: 각 년도 응답한 원표본 및 신규표본 가구 또는 가구원
- 가중치: 각 년도의 횡단면 가중치

○ 1~15차년도 자료 이행 분석(예: 1차년도 취업자의 15차년도 취업유무)

- 분석대상: 1~15차년도 계속 응답한 원표본 가구원
- 가중치: 1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 가중치 변수명

- 횡단면 가중치(cwt): h_cwt(가구), p_cwt(가구원)
- 통합횡단면 가중치(cwt): h_mcwt(가구), p_mcwt(가구원)
- 종단면 가중치(lwt): h_lwt(가구), p_lwt(가구원)
- 통합종단면 가중치(lwt): h_mlwt(가구), p_lwt(가구원)

III

일반적 사항

1~15차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User's guide

III. 일반적 사항

1. 데이터 파일

재정패널 데이터 파일 종류는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로 구분되며, 파일명은 조사 차수와 데이터 유형에 따라 표현된다.

○ 가구 데이터

- 횡단 데이터는 조사에 성공한 가구와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 차수별로 데이터에 포함된 가구 수⁹⁾와 가구원 수는 다르다.
- 재정패널 데이터는 기준 변수를 통해 응답 가구를 구분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준변수¹⁰⁾는 가구 고유번호인 HID와 가구원 고유번호인 PID이다.
- 모든 차수의 횡단데이터 파일명과 변수명은 각 조사 차수를 구분하기 위해 두 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1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01~15'로 구분된다.
- 파일명: NaSTaB_H(가구), NaSTaB_P(가구원)

○ 가구원 의식 조사

- 3차년도부터 가구원 조사의 일부 영역에서 조사되어 오던 의식과 관련된 문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2016년에 시행된 9차년도 조사부터 별도의 설문지로 구성된 가구원 의식 조사를 설계하여 조사하였다.
- 조사 대상은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는 모든 가구원 중 가구원 의식 조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응답거절 등의 사유로 조사에 실패한 경우에는 의식 조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 가구원 의식 조사의 결과는 가구원 데이터(NaSTaB_P)에 9차년도부터 함께 제공된다.

9) <표 I-2> 참조

10) 정의는 4페이지를 참조, 부여 원칙은 65페이지를 참조

○ 이력 조사 데이터

- 이력 조사 데이터는 6차년도에 조사된 부가 조사 데이터이며,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는 7차년도에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력 데이터에는 2개년도 조사 데이터가 합쳐져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 출산이력 데이터는 가구 설문지를 응답하는 가구주가 설문에 참여하였고, 직업이력 데이터는 가구원 설문지를 응답하는 가구원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 파일명: NaSTA_B_BIRTH(출산이력), NaSTA_B_JOB(직업이력)

2. 변수명

재정패널 데이터는 모든 차수에서 동일한 원칙을 통해 변수명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변수명은 여러 차수에 걸쳐 조사되는 동일한 문항의 병합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며, 변수명 부여 원칙을 파악하면 설문지를 통해 변수명의 유추 가능하다.

<표 III-1> 통합 변수명 정보-예시

변수명 예시 :	<table border="1"> <tr> <td>h</td><td>01</td><td>a</td><td>a</td><td>001</td></tr> </table>	h	01	a	a	001
h	01	a	a	001		
구분	조사 차수	part (대분류)	set (중분류)	일련번호		
h / p	01~15	a	a	001		

○ 구분

- 가구 데이터의 경우 h, 가구원 데이터의 경우 p로 시작한다.
- 따라서 <표 III-1>에서 변수명 예시로 표시되어 있는 'h01aa001' 변수는 h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구 데이터의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part(대분류)

- 가구와 가구원 조사문항은 대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사 part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구 기본 현황은 a, 주택과 자동차 보유현황은 b part에 위치해 있다.
- 대분류(part)에는 동일한 유형의 질문들이 있으며, 데이터에서도 이를 구분하기

위해 설문지와 동일한 알파벳 변수명을 부여하고 있다.

- 따라서 <표 III-1>에서 변수명 예시로 표시되어 있는 'h01aa001' 변수는 가구 데이터에서 A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조사영역의 변수명인 것을 알 수 있다.

○ set(중분류)

- 각 part 내의 관련 문항은 여러 개의 set으로 구성된다.
- set는 대분류 내에서 세분류되는 문항의 뮤음 단위이며, 예를 들어 가계의 소비지출 현황은 대분류 파트이고, 소비지출 중 주거비 지출 문항은 중분류 세트이다.
- 따라서 <표 III-1>에서 변수명 예시로 표시되어 있는 'h01aa001' 변수는 가구 데이터 A파트에서 a로 시작하는 문항에 해당하는 변수명인 것을 알 수 있다.

○ 일련번호

- 일련번호는 중분류 내에서의 해당하는 문항의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여된다. 대부분 중분류 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문항은 유무 또는 여부를 조사하는 문항이다.



<표 III-2> 통합 변수명 대분류 구분

구분	분류 11)	조사내용	조사 차수
각 구	A	가구기본현황	1~15차
		주택, 자동차 보유 현황	
		오토바이 보유 현황	
	B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종부세환급금	
		재산세 납부현황	
	C	가계 지출 현황	
	D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E	복지현황	
	F	자산 및 부채현황	
각 구 원	G	유가환급금	2~3차
	H	근로장려금	
	I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J	유가보조금	
	L	출산	
	A	경제활동	2~15차
	B	소득 및 연금/보험 관련 지출 현황	
	C	근로소득공제 현황(근로소득자용)	
	D	소득공제현황(종합소득자용)	
의 식 조 사	A	사회, 정치	9~15차
	B	조세, 복지 제도	
	C	납세 관련 태도	9~10차/15차
	D	조세, 세무 행정 평가	
	E	건강, 은퇴	10차
	F	위험회피	
	H	시간선흐	10~15차
	I	공공재 공급 기여	

11) 대분류는 영역별로 부여하며, 영어 알파벳순이다. 다만, 한번 부여된 영역의 알파벳명은 변경 또는 재부여되지 않는다.

3. 가구 고유번호(HID) 및 가구원 고유번호(PID) 부여 원칙

재정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와 동일한 개인을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고유번호인 HID와 PID를 부여한다. HID와 PID는 자료병합 시 key 변수가 된다.

가. HID

○ 가구 고유번호

- 가구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한번 부여되면, 동일한 가구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번호이다.
-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명은 'HID_[HID+조사 차수 두자리]'로 나타내며, '__'자리에는 해당 조사 차수를 나타내는 숫자 2자리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차년도 데이터에 가구 고유번호의 변수명은 'HID01'이다.

○ HID 부여방법

- HID는 2008년 1차년도 원표본 추출 당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동일한 가구에게 매년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변동시키지 않는다. 다만, 분가 가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련의 원칙에 따라 ID를 부여한다.
- 1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는 순서대로 1번부터 5,014번 ID를 부여하고, 맨 앞 자리를 '1'로 부여하였다. 2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는 대체한 가구의 ID를 그대로 사용하되, 90000~94999로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 13차 횡단표본의 경우 105001~109999의 ID를 부여하였다.
- 14차 신규표본 가구는 85001번부터 89999번 사이의 ID가 부여되었으며 15차 대체표본은 95001번부터 99999번 사이의 ID가 부여되었다.
- 분가 가구의 경우 분가 전 ID를 그대로 사용하되, 분가횟수에 따라 '2~8'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 데이터 상에서 HID를 가지고 1차년도 추출 표본, 2차년도 추출 표본, 분가 가구를 구분 할 수 있다. 1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의 경우 1차년도(2008년)부터 조사에 성공한 가구이므로 HID01에 가구번호가 있는 10000번대의 가구이다.

- 1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 HID: 10001~15014
- 2차년도 추출 원표본 가구 HID: 90000~94999
- 14차년도 추출 신규표본 가구 HID: 85001~8999
- 15차년도 추출 신규표본 가구 HID: 85001~89999
- 13차년도 추출 횡단표본 가구 HID: 105001~109999
- 분가 가구 HID: 20000~84999



○ HID 병합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정패널 조사 가구 데이터에는 각 차수마다 'HID_'의 변수명으로 HID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자료 병합 시 HID_ 변수 중 missing이 있다면, 해당 차수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나. HID_b

○ 분가 전 가구 고유번호

- 분가로 인해 신규 발생하는 가구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변수로 분가하기 이전 가구의 HID를 'HID_b'로 나타내고 있다. 이 변수는 2차년도 데이터부터 확인 할 수 있다.
- 분가 가구 데이터 병합 시에는 'HID_'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PID

○ 가구원 고유번호

-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처음 부여된 이후 변화하지 않는 고유번호이다. PID는 가구를 이동하더라도 변하지 않아 마치 개인의 주민번호처럼 가구원을 구분하여 주는 변수이다.
-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변수명도 PID로 되어 있다. 다만,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에서 변수명 부여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 가구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PID는 H를 붙여 'HPID_[PID+가구원 번호 두 자리]'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가구 데이터에 포함된 PID라는 의미이며, 가구원 데이터에는 'PID_[PID+조사 차수]'로 표현되어 있다. 동일한 인물에 있어 HPID_ 와 PID_은 같은 값을 가진다.
- 이같이 PID가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에서 다른 변수명을 갖는 이유는 변수명에 포함되어 있는 '_(두 자리 수)'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즉, 가구 데이터에서 두 자리 수는 해당 가구원의 위치, 몇 번째 가구원인지를 변수명에서 표현하고 있고, 가구원 데이터에서는 몇 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PID 인지를 표현하고 있다.

구분	가구 데이터	가구원 데이터
변수명	H P I D 0 1	P I D 0 1
의미	01번째 가구원의 PID	1차년도 PID
값	1000101	

○ PID 부여방법

- PID는 총 7자리로 구성되며, 부여 당시 '가구번호(HID)' 5자리와 그 가구에서 '가구원의 구성번호' 2자리를 조합하여 생성한다.
- PID가 2000000번대 이후로 시작하는 가구원은 분기에 의해 신규 발생한 가구의 가구원을 의미한다.

HID: 10001		
가구원명	가구원 구성번호	PID
김 ○○	01	1 0 0 0 1 0 1
이 △△	02	1 0 0 0 1 0 2

○ PID 병합 및 구조 변환

-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가구 데이터에, 가구원 소득과 관련한 개인의 자료는 가구원 데이터에 있으며, 가구원 소득 등 개인 자료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데이터의 'PID_' 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가구원은 소득이 있거나 소득 활동을 했던 자만 데이터에 존재한다는 것에 유의¹²⁾하여야 한다.
- 가구 데이터에서 가구원 인적사항을 구조 변환하기 위해서는 'HPID_'가 기준

이 되지만, 가구에서 구조 변환한 데이터를 가구원 데이터와 병합하기 위해서는 변수명을 재설정(rename)해주어야 한다.

○ PID 소멸

- 동일한 PID는 2명 이상의 가구원에게 부여할 수 없으며, 가구원이 사망하여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PID는 소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 가구 조사에서 측정하는 가구원의 인적사항의 경우에도 탈락한 가구원의 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더 이상 측정하지 않는다. 즉, 10001번 가구의 3번 가구원이 작년 1월에 분가하여 해당 가구에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다면, 10001번 가구의 03번 가구원 응답변수는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가구원이 전입하더라도 PID 부여 시 03번 가구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원은 1000103 PID를 그대로 가지고 분가 가구에서 조사된다.

4. 변수값

가. 일반 변수값

○ 변수값

- 숫자로 입력되는 변수값은 크게 '>0', '-9', 'missing(결측)' 으로 구분된다.
- 직접 기입하여 응답하는 '기타' 문항의 경우라도 가급적 코딩하여 응답범주로 데이터화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코드북 또는 코드북의 오픈보기카드를 참고하면 된다.
-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예시는 재정패널 조사 항목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무 질문에 따른 변수값 부여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12) 작년 한 해 소득이 있었거나, 소득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차수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원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가구원이 있다. 그러나 조사 초기인 1-2차년도를 제외하고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하며, 사유는 대개 단순 거절 또는 정부지원현금의 단순누락으로 인한 조사 실패로 파악된다.

○ 변수값 '-9'

- 해당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을 거절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 부여되는 값이다.
- 모든 응답에 '-9' 응답값이 존재 할 수 있다. 특히 금액의 총합 계산 시 일괄 합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결측(missing)으로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해당사항 없음'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 missing('해당사항 없음')

- 설문 문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변수값에 '.'으로 표시되며, 이는 결측값으로 처리한다. 대부분 유/무 여부 질문에서 '아니오'인 경우에 하부 질문에 나타나는 응답값이며, 평균을 구하고자 할 경우 '0'처리하여 사용한다.
- 다만, 가구원 데이터 변수 중 p_ca207, p_ca209의 경우 1~7차년도 데이터에서 이례적으로 '-6' 변수값을 부여한 경우가 있다. 이는 보험료 공제내역 중 민간 보험료 공제내역과 보장성 보험료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부여된 '-6(구분 안됨)' 변수값으로 해당 변수에 대한 분석 시 구분이 필요하다.

<표 III-3> 일반 변수값 부여 방식



나. 금액 변수

○ 소득금액

- 설문 문항 중 소득을 조사하는 항목은 모두 세금을 포함한 세전 소득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 조사 단위

- 금액의 응답은 대부분 '만원' 단위이며, 일부의 항목에 한해 '천원', '백원'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천원' 이하 단위로 조사하였더라도 데이터에서는 만원 단위로 입력되어 있으며, '.(소수점)' 이하로 표시하고 있다.

5.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재정패널 조사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장실사 기간 동안 가구원의 협조를 통해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가. 수집 대상 증빙서류

○ 근로자

- 1~2월경 근무처로부터 받은 직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집한다.

○ 종합소득 신고자¹³⁾

-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명세서(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

13)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2가지 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천정수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를 수집한다.

나. 수집 정보의 데이터화

○ 가구원 설문지 소득공제내역 항목

- 수집된 증빙서류의 내용은 가구원 설문지 연간소득, 소득공제내역, 결정세액 문항의 응답값으로 입력된다.

○ 증빙서류 제출 확인 변수

-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에서 증빙서류 제출 가구원인지 여부는 [ps_a13][소득공제 근거자료 제출여부] 변수에서 '제출'인 케이스를 확인하면 된다.

다. 조사 차수별 증빙서류 수집 현황

○ 증빙서류 수집현황

- <표III-7>은 증빙서류 수집 대상이 되는 가구와 가구원 중 실제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해당 case

-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중 실제 소득신고를 한 case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나 금융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 수집 건수

- 최종 수집된 서류의 수량을 의미한다.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한 명의 가구원이 2장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수집 건수(가구)는 가구원의 합계(근로소득 가구원 수집 건수 + 종합소득 가구원 수집 건수)와 다를 수 있다. 한 명의 가구원이 근로소득 연말공제



서류와 종합소득 신고의 2종류를 동시에 제출 한 경우는 1차 2건, 3차 1건, 4차 2건, 5차 2건, 6차 5건, 7차 1건, 8차 9건, 9차 12건, 10차 7건, 11차 10건, 12차 32건, 13차 5건, 14차 13건, 15차 11건이었다.

○ 수집률

- 증빙서류는 매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과년도 귀속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따라서 증빙서류 수집률은 조사가 진행 될수록 소폭 상승 할 가능성이 있다.
- 수집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패널 조사 증빙서류 수집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보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의 서류 수집률이 더 낮은 상태이다.

<표 III-4> 증빙서류 수집 현황

구분	해당 case(건)	수집 건수(건)	수집률
1차년도(2007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612	703	26.9%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387	639	26.8%
종합소득 신고	721	97	13.5%
2차년도(2008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800	1,331	47.5%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576	1,223	47.5%
종합소득 신고	806	213	26.4%
3차년도(2009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772	1,495	53.9%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558	1,345	52.6%
종합소득 신고	879	252	28.7%

구분	해당 case(건)	수집 건수(건)	수집률
4차년도(2010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769	1,673	60.4%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546	1,516	59.5%
종합소득 신고	874	289	33.1%
5차년도(2011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757	1,707	61.9%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645	1,544	58.4%
종합소득 신고	852	316	37.1%
6차년도(2012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867	1,791	62.5%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786	1,651	59.3%
종합소득 신고	920	364	39.6%
7차년도(2013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12	1,892	65.0%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954	1,785	60.4%
종합소득 신고	894	378	42.3%
8차년도(2014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58	1,928	65.2%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3,064	1,876	61.2%
종합소득 신고	901	377	41.8%
9차년도(2015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78	1,944	65.3%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3,137	1,921	61.2%
종합소득 신고	920	376	40.9%



구분	해당 case(건)	수집 건수(건)	수집률
10차년도(2016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79	1,967	66.0%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3,196	1,939	60.7%
종합소득 신고	937	401	42.8%
11차년도(2017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511	1,639	68.2%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3,266	2,001	61.4%
종합소득 신고	974	415	44.4%
12차년도(2018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3,014	2,000	66.4%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3,265	2,049	62.8%
종합소득 신고	917	382	41.7%
13차년도(2019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5,713	2,658	46.5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6,154	2,710	44.0
종합소득 신고	2,078	473	22.8
14차년도(2020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5,417	2,484	45.9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5,969	2,539	42.5
종합소득 신고	1,810	512	28.3
15차년도(2021년 귀속)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5,556	2,844	51.2
소득신고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6,179	2,870	46.4
종합소득 신고	1,956	615	31.4

IV

설문 문항 가이드

1~15차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User's guide

IV. 설문 문항 가이드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용과 가구원 개인용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설문의 구성과 개괄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1. 설문 구성

○ 문항 설계

- 1년의 조사 주기를 가지고 있는 재정패널 조사는 기본적으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설문을 반복하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는 조사 준비 과정에서 설문 문항의 측정 필요성(중요도), 활용 가능성, 관련 제도의 변화, 조사 난이도 등에 따라 최종 설문 문항¹⁴⁾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 최종 설문 문항에는 매년 조사하는 설문과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조사하는 부가 조사 설문이 포함된다. 부가 조사 설문은 사회적 이슈나 제도의 변화 등에 따른 패널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다.

○ 주요 주제 구성

- 1차년도부터 15차년도의 주요 설문 주제는 다음 <표 IV-2>, <표 IV-3>과 같다.
- 상세한 설문의 내용은 통합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라며, 표에서 나타난 조사영역 중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조사 차수에서 새로 추가된 영역이다.
- <부가 조사>는 해당 차수에 일시적으로 조사한 설문으로 시기마다 변경된다.
- 의식 조사의 경우 4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구원용 설문지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사 차수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 9차년도부터는 가구원용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을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설문 영역으로 생성하였다. 이 설문지는 ‘가구원 의식 조사’로 명칭하며, 가구원

14) 최종 설문 문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 연구진을 비롯하여 실사 수행 기관 연구진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된다.

데이터에 포함하고 있다. 차수별 조사된 문항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 의식 조사 조사 문항(4차~8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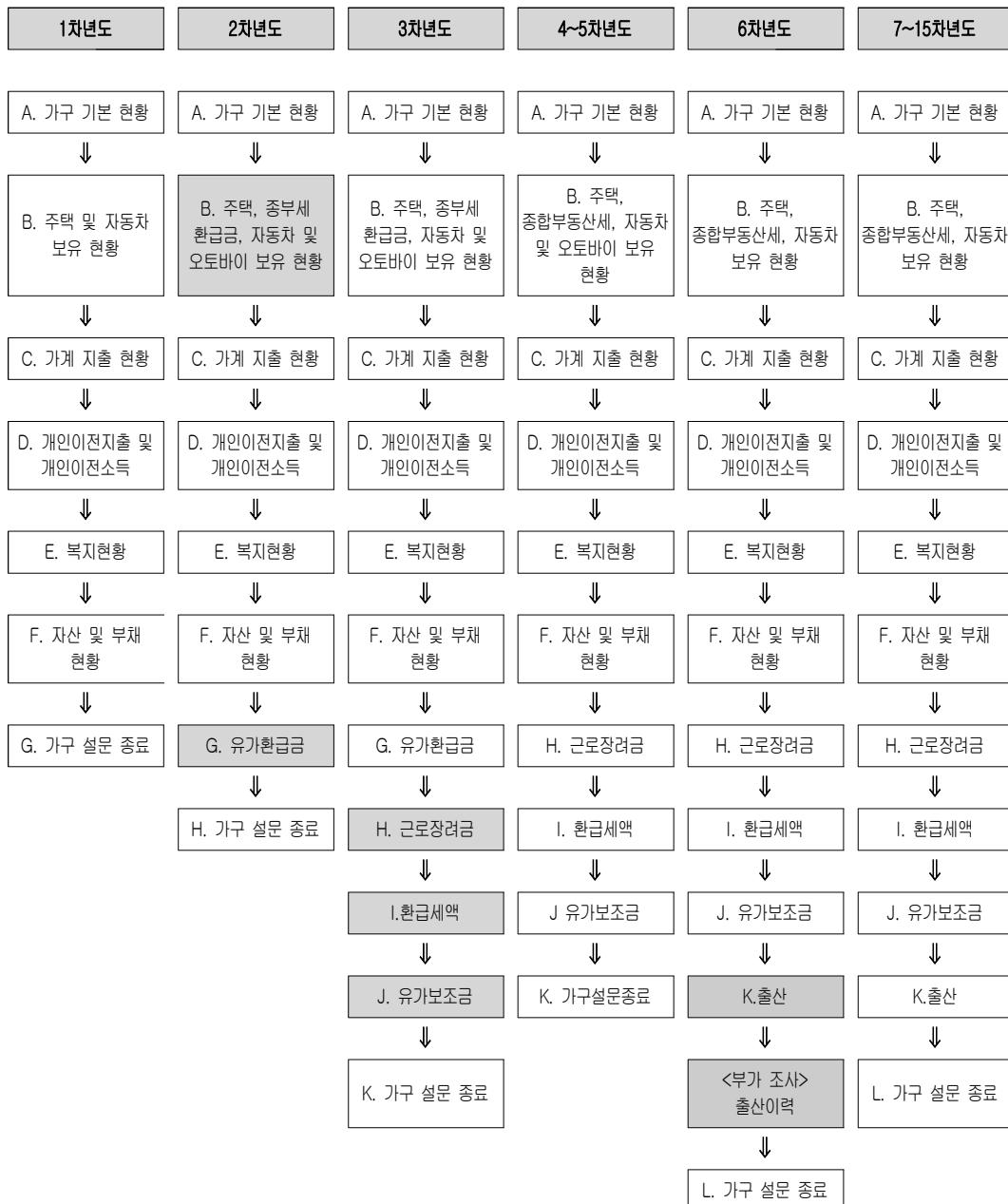
분류	조사내용	조사 차수
A	조세제도 평가	4~8차
	정부 혜택에 대한 평가	
	세부담 평가	
	복지정책 확대 찬반	4~7차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찬반 및 영향력	4차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 세부담 견해	5~8차
	통일세 신설 찬반 및 세부담 견해	5차
B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8차
	적정 조세부담률	
C	타인에 대한 신뢰	8차
D	정부관료에 대한 신뢰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뢰	
<부기>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차
	기대수명	
<부기>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	4차

<표 IV-2> 의식 조사 조사 문항(9차~15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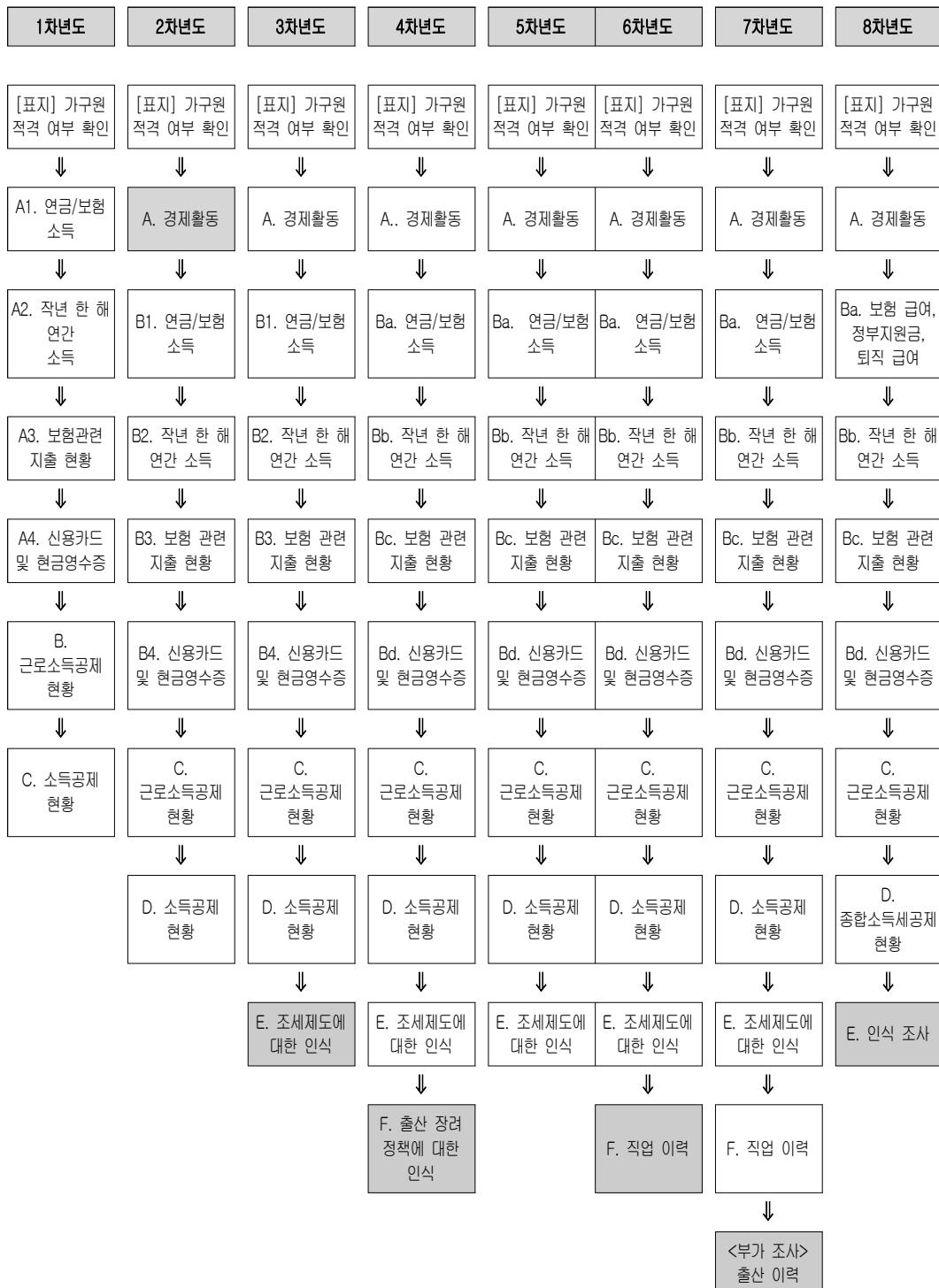
분류	조사내용	조사차수
A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적 성향 및 관심	
B	세금 납부 정도	9~15차
	세금과 정부혜택에 대한 인식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금 납부 정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정도	
	소득격차	
	복지 수준 및 축소/확대 부문	
	세 부담 및 복지 수준	
C	세금 신고에 대한 영향	10차
	납세관련 인지도	
D	조세 세무 관련 행정 평가	
F	상품 투자배분 상황 응답	10~15차
E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9~15차
	기대수명	
	은퇴 및 적정 노후 생활비	
F	위험회피	10~15차
H	시간 선호	13~15차
I	공공재 공급 기여	
<부가>	가구원의 출산 관련 지원 제도 사용	12차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13차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14차
	코로나19 관련 정부정책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 변화	15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	



<표 IV-3> 가구용 설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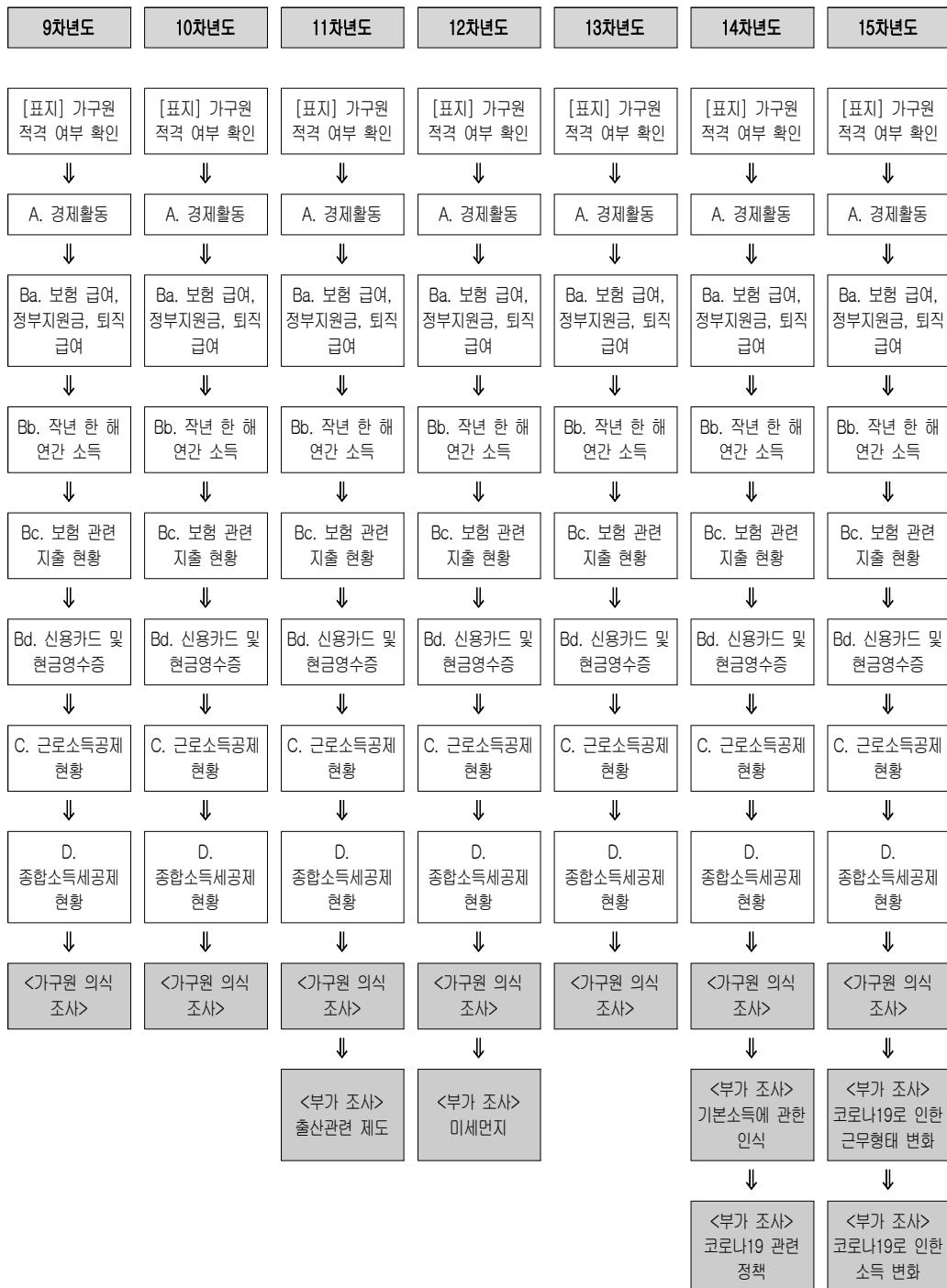


<표 IV-4> 가구원용 설문 구조





<표 IV-5> 가구원용 설문 구조



2. 1~15차년도 설문 특이사항 비교

본 절에서는 1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설문의 주요 내용 중 각 조사 차수에 신규 삽입 또는 삭제 등의 변동이 있었던 주제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1차년도

○ 1차년도 설문 설계

- 2008년 1차년도에 조사한 설문 문항들은 2007년 하반기 실시한 예비 조사의 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정한 설문지는 관련 학계의 자문 교수로부터 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 다만, 조사 첫해인 만큼 패널 구축의 난이도를 감안해 일부 측정 항목을 최대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이는 조사 분량이 많아질 경우 응답자의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년도 조사의 경우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 분석을 위한 소득, 지출, 자산, 복지수혜, 납세정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차후 조사에서 설문 문항을 구체화 및 정교화하도록 수정·보완할 계획을 세웠다.

나. 2차년도

○ 가구 설문지

- 가구원의 경제활동 현황 조사
- 거주 주택 외 주택 정보, 종합부동산세 납부, 오토바이 보유 현황 조사
- 가계 지출 현황 중 누락된 항목 조사(교통비, 가전제품 구입비, 가구, 화장품 등)
- 정부 환급금(유가환급금, 종부세 환급금) 조사
- 측정 정확도·응답자 이해도 향상을 위한 질문 수정: 정부 지원금 수급(수급 개월 수, 월평균 금액, 연간 금액) 정보 세분화, 1차년도에 기타 항목으로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농기계, 가축, 선박 등의 자산 세분화

○ 가구원 조사표

-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영역 추가(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소득 활동 없이 소득을 올린 경우)
- 조사 시점이 현재인 경우에 한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 공적연금의 가입 및 납부 구분
- 소득공제 항목 변경(장기 주식형 저축 공제 문항 추가, 종합소득자의 기타 공제를 표준공제와 표준공제를 제외한 기타공제로 수정)

다. 3차년도

○ 가구 설문지

- 주택현황에서 현재 거주 및 보유주택의 소유자 명의 조사
- 이전소득/이전지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간의 이전소득 항목에서는 용돈과 학비 등은 제외하고, 증여나 기타의 목적에 따라 주고받은 금전 및 재산을 조사. 가구 외부와 주고받는 이전소득/지출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고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학력, 소득유무 등)을 추가로 조사
- 일생 동안 받은 상속 현황 조사
- 정부 환급금 조사 항목(유가환급금, 근로 장려금, 환급받은 세액, 유가보조금의 금액과 사용용도) 추가

○ 가구원 설문지

- 조세제도 형평성 및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문항 조사

라. 4차년도

○ 가구 설문지

- 혼인상태를 '① 기혼(배우자 있음)', '② 기혼(사별, 이혼)', '③ 미혼(결혼한적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
- 통상적 일주일 총 근로시간(잔업시간 포함), 2010년 기준 급여가 지급되는 일주일 총 잔업시간 추가 조사

- 가사도우미서비스 조사
-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관련 문항 조사
- 근로 장려금 수급 안내 관련 문항(근로장려금 신청여부, 수급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수급안내 받은 후 신청 여부, 신청 후 지급 여부 등) 세분화
- 일생동안 받은 증여 현황 조사
- 지난 1년간 받은 상속 현황 조사

○ 가구원 설문지

- (부가 조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 연간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소득의 세부 내용 추가 및 수정
- 경제활동상태에서 직장 및 출퇴근 정보 조사
- 가구 설문에서 조사하던 보훈연금, 노령연금,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 정보 조사

마. 5차년도

○ 가구 설문지

- 경제활동상태 중 직업의 분류기준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맞도록 수정
- 보유주택의 취득년도 조사
- 재산세 납부현황 조사
- 오토바이 보유현황 삭제
-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이전 소득 및 이전 지출 문항을 타 가구 이전 소득 및 이전 지출 문항으로 포함시키도록 수정
- 가구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해 조사
- (부가 조사)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정보 조사
- 의료급여 대상 가구원 및 1년 동안의 병원 (치료 목적의) 방문 횟수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혜택에 대해 조사
- 신용카드 관련 대출 조사

○ 가구원 설문지

- 경제 활동 상태 중 직업의 분류 기준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맞도록 수정

- 지난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통상적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는지 조사
- 신용카드 사용액과 직불카드 사용액 구분하여 조사
- (부가 조사) 통일세 신설에 대한 의식 조사
- 4차년도 부가 조사(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삭제

바. 6차년도

○ 가구 설문지

- 주말부부 존재 유무 및 주말 부부 배우자의 소득, 지역 조사
-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정교화
- 주택 구입 및 매각 사유 조사
- 인터넷 복합상품 조사 및 휴대전화 보유 현황 조사
- 문화생활 1회당 사용액 조사
- 인테리어비 조사
- 혼인 관련 지출 비용 세분화하여 조사
-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및 민간보험료 지출 비용 조사
- 타 가구 이전 지출 및 소득에서 타 가구원의 소득수준 조사
-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등을 보훈급여금으로 용어 변경하여 조사
- 양육지원금 수급대상 아동 연령별 조사
- 부채상환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수급 받지 못한 사유 조사
- 출산 관련 지출 비용 조사
- (부가 조사) 2008년~2011년 사이 출산한 가구원의 출산 및 양육 정보 조사

○ 가구원 설문지

- 유가증권의 양도를 통한 소득 유무 및 금액 조사
- 공적연금 총 납부 개월 수 조사
- 신용 및 직불카드 사용액을 국내 사용액과 해외 사용액으로 분리하여 조사
- 소득공제 현황(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항목 조사
- (부가 조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직업이력 조사

사. 7차년도

○ 가구 설문지

- 거주주택 및 보유주택별 재산세, 재산세 면제 주택 여부 조사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구입에 미친 영향 조사
- 자동차 장기리스 현황 조사
- 휴대전화 요금 납부 현황(타 가구원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및 통신사별 보유대수 조사
- 기부분야 중 종교기관 기부 성격을 구분하여 조사
- 부채상환의 어려움 조사 구조 변경하여 조사(연체 발생을 중심으로)
-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

○ 가구원 설문지

- 자동차 보험 소득 삭제(조사하는 연간소득의 성격과 상이한 개념이며, 매년 응답빈도와 금액의 비율이 현격히 낮아 삭제)
- 양도소득을 순소득과 순손실로 구분하여 조사
- 공적연금 미납부사유 조사
- 가입한 공적연금의 은퇴 후 수급 예상 금액 조사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사용처를 세분화(전통시장, 대중교통)하여 조사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여부 문항 삭제(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 따라 문항 삭제)
- 타인에 대한 신뢰를 조사하는 문항 삽입

아. 8차년도

○ 가구 설문지

- 주말부부 문항 보강을 위한 주말부부가 된 사유, 주말부부 소비생활에 대한 문항 신규 추가
- 주택 공시가격 신규 조사
-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의 지역 조사

- 오토바이 응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규 문항 추가
- 기부분야 중 종교기관 기부 성격을 구분하여 조사
- 부채상환의 어려움 조사 구조 변경하여 조사(연체 발생을 중심으로)
-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

○ 가구원 설문지

- 자동차 보험 소득 삭제(조사하는 연간소득의 성격과 상이한 개념이며, 매년 응답빈도와 금액의 비율이 현격히 낮아 삭제)
- 양도소득을 순소득과 순손실로 구분하여 조사
- 공적연금 미납부사유 조사
- 가입한 공적연금의 은퇴 후 수급 예상 금액 조사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사용처를 세분화(전통시장, 대중교통)하여 조사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여부 문항 삭제(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 따라 문항 삭제)
- 타인에 대한 신뢰를 조사하는 문항 삽입

자. 9차년도

○ 가구 설문지

- 가구원 인적사항 조사 문항에서 가구원별 종교 현황 조사
- 무상거주 관련 세부 내역 조사
- 타 가구 이전지출 항목에서 자녀배우자에 대한 응답 문항 추가
- 금융자산 측정항목 중 연금저축 분리하여 조사

○ 가구원 설문지

- 가구원 의식 조사 설문지 신설
- 신뢰도 측정 강화를 위한 타인 유형 세분화
- 정치성향 및 정치관심도 측정 위한 문항 추가
- 소득격차에 대한 의견 측정하기 위한 문항 추가
- 가상 상황에서의 납세태도 측정



차. 10차년도

○ 가구 설문지

- 공동주택 주거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세부 주거비용 분리하여 조사
- 반려동물 관련 지출비 신설
- 체육·음악·문화 활동비를 체육 활동비와 음악·문화 활동비로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수정
- 보건의료비에서 건강검진비 항목 신설
- 각 가구원이 계약한 민간보험의 유형과 납입 금액을 모두 응답하도록 신설
- 자녀장려금 문항 추가

○ 가구원 설문지

- 근로시간 응답 기준 변경(올해 5월 1일→올해 4월 마지막 주 일주일)
- 공무원 연금에서 분할연금 문항 추가
- 특수직 퇴직연금 수령 개월 수 추가
- 조세, 세무에 대한 행정평가 항목 신설
- 응답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조사하는 항목 추가

카. 11차년도

○ 가구 설문지

- 주택 구입 의사결정 영향요인 문항 삭제
- 자동차 배기량 문항에서 특수차량의 적재량 응답가능 하도록 지침 수정
- 연간 자동차세 납부금액 문항 신설
- 교육비 항목의 어린이집 유형을 세분화, 단, 어린이집 이외의 교육기관의 유형과 구분하기 위해 응답 코드를 어린이집의 경우 ③번부터 부여('③ 국공립', '④ 사회복지법인', '⑤ 법인단체 등', '⑥ 직장', '⑦ 가정', '⑧ 협동', '⑨ 민간')
- 가사도우미서비스 중 간병 도우미 서비스 지출 금액문항 신설
- 가사도우미서비스 중 산후 및 육아 도우미 서비스 신설
- 건강보험료 미지출 사유에서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지침 수정

- 복지수혜 영역에서 10차년도까지 '자녀양육지원금'으로 조사되던 E영역을 '양육(출산) 및 교육지원금'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금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
- 출산 관련 지원금 조사 항목 신설
- 만 0~5세 이하 아동 관련 지원금 조사 항목 신설
- 만 6세 이상~고등학생 가구원 관련 지원금 조사 항목 신설
- 대학 및 대학생 가구원 관련 지원금 조사 항목 신설
- 출산 관련 지원금의 경우 여러 차례에 지급되기보다 1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출산 관련 지원금 수급 개월 수 및 월평균 수급액은 조사 항목에서 삭제
- 부동산 및 기타자산 조사영역에서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를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신설(작년 말을 기준으로 한 중고차 평균가격으로 응답하도록 설정)

○ 가구원 설문지

- 경제활동상태 조사영역에서 현재 주된 일자리의 기간을 당해 연도 1월~4월 말로 수정하도록 지침 변경
- 경제활동상태 조사영역에서 평균 초과 근로시간을 요일별로 응답하는 문항의 활용도가 낮아 기존 문항은 삭제 후 조사방식을 보완하여 새롭게 조사하도록 신설
- 경제활동상태 조사영역에서 당해 연도 1월~4월 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 수당 등 근로 현황을 조사하도록 신설
- 가구원 의식 조사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 영역에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 세 비율에 대한 조사 항목을 신설
- 가구원 의식 조사에서 납세 관련 태도 및 조세와 세무행정 평가 영역 삭제
- 출산 경험과 출산 시 일자리 정보, 일자리에서 출산 관련 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부가 조사 영역 신설

타. 12차년도

○ 가구 설문지

- 전기차량 유료 충전 시설 이용 여부 및 월평균 이용 금액 조사 항목 신설
- 가전제품구입비 항목에서 공기청정기 보유 대수, 구입(렌탈)시기 및 금액, 미세먼지 차단 및 감소를 위해 지출한 금액 조사 항목 신설
- 혼인장례이사비 항목에서 조사 의도와 관계없는 '비혈연관계' 응답 코드 삭제
- 가사도우미서비스 중 산후 및 육아 도우미 서비스 문항을 육아 도우미 서비스로 보완하고, 산후 도우미 서비스 문항은 출산 관련 비용 지출에서 측정하도록 수정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세부내역 확인을 위해 응답 코드 '③ 주거급여' 추가 및 주거급여 지원 여부 및 금액 조사 항목 신설
- 주거급여 조사 문항 신규 추가로 인한 혼동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로 위딩 수정
- 양육(출산) 및 교육지원금 항목에서 가구별 지원받는 유형 확인을 위한 문항은 관련 문항 형식의 수정으로 삭제
- 양육(출산) 및 교육지원금 항목에서 기존의 연령별 조사하는 방식에서 만 0 세~대학원생 가구 및 비가구원에 대한 지원금 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아동 수당 문항 신설
- 유가보조금 문항 중 사용 용도 구분의 어려움이 많아 유가보조금 사용 용도 조사 항목 삭제

○ 가구원 설문지

- 경제활동상태 조사영역에서 찾고 있는 일자리 근로 시간 형태 문항을 임금 근로자 응답자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 변경
- 연간 소득 문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확인을 위한 문항 신설
- 가구원 의식 조사 중 조세제도에서 총 세전소득 및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의 응답항목 구간 수정
-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발생요인 및 원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시행 찬성여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부가 조사 영역 신설



파. 13차년도

○ 가구 설문지

- 가구원 교육의 졸업여부 파트에서 조사의 정교화 위하여 휴학상태 추가
- 가구원 인적사항 문항 보강을 위하여 출생지 문항 신설
- 연간 자동차세 미납 이유 세분화를 위하여 '차년도 납부'보기 추가
- 가전제품 구입비 조사 파트에서 공기청정기 문항 신설
- 교육비 부문에 학교 소재지 문항 신설
- 교육비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장학금 수급 여부 및 종류 문항 추가

○ 가구원 설문지

- 의식 조사에서 시간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별 투자 항목 추가
- 공공재 공급 기여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상황별 기부 금액 및 지원 금의 배부 비율 조사 항목 추가

하. 14차년도

○ 가구 설문지

-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금융자산 파트에 조사문항 신설

○ 가구원 설문지

- 소득 파트에 국내 및 해외 주식, 채권·펀드 및 유가증권 등 (순)소득/(순)손실 금액 문항 신설
- 기본소득 도입 가정 후 근무시간 및 여유시간 운용방법 조사문항 신설
- 코로나19 정책(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거리두기)에 대한 문항 신설

거. 15차년도

○ 가구원 설문지

- 주된 일자리의 고용계약 기간 유무 변수 추가
- 가구원 의식조사에 행복도 측정 문항 신설
- 납세 관련 태도 조사 파트 신설
- 코로나 19로 인한 근무형태 및 소득 변화 부가조사 실시

3. 응답 단위

○ 응답 단위

- 재정패널 조사의 설문 문항은 내용에 따라 가구 전체의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과 개인의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나뉜다.
- 가구용 설문지의 응답자는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이고, 대부분의 문항이 가구의 전체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일부 문항에서는 가구원을 단위로 정밀하게 조사하는 영역이 있다. 예를 들면, 소비지출 항목의 일부(흡연), 타 가구 이전 소득 및 지출, 상속 및 증여 등의 문항은 가구용 설문의 조사 영역이지만 가구원 개인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 국내외 주요 가구 패널 조사의 설문 주제별 응답 단위 비교

- 가구 조사를 진행하는 국내외 주요 패널 조사에서도 그 응답 단위가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로 나뉘는데, 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 재정패널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조사 단위가 비슷하며, 소득 및 자산관련 항목에서 재정패널 조사의 경우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 모두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설문 문항으로 오는 응답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정보, 가구 지출, 소득 항목은 HRS, 노동패널 등의 타 패널 조사의 구조와 내용을 유사하게 구성하되,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환급금 수령 여부, 가구원 소득 등의 설문에서 개인 단위로 응답 단위를 구체화하였기 때문이다.

<표 IV-6> 국내외 주요 가구패널 조사의 설문 주제별 응답 단위 비교

설문 내용	재정패널 조사	노동패널 조사	HRS
A. 가구원기본정보	H	H	H
B. 주택 정보	H	H	H
C. 가구지출	H	H	-
D. 개인소득	H + I	H + I	H
E. 자산, 부채, 상속	H + I	H	H
F. 경제활동상태	H + I	I	I
G. 연금/보험 관련	I	I	I

주: 1) H: 가구 단위 조사(household unit)

2) I: 개인 단위 조사 (individual unit)

4. 측정기준 시점

재정패널 조사의 설문 문항은 조사 시점에서의 작년 한 해 동안 내용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몇 가지 항목에서는 기준이 되는 측정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항목별 측정 기준 시점은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항목별 측정기준 시기

구분	항 목		측정기준 시기
	분류	설명	
가구	Aa	가구 기본 현황	작년 한 해/현재
	Ba~Bc	주택, 자동차, 오토바이	작년 말/작년 한 해
	Ca~Cr	가계지출	작년 한 해
	Da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작년 한 해
	Ea	복지현황	작년 한 해
	Fa~Fc	자산 및 부채현황	작년 한 해
	Ga	유가환급금	작년 한 해
	Ha	근로장려금	-
	Ia	연말정산환급금	작년 2월 중
	Ib	종합소득세환급금	작년 5~6월 중
가구원	Ja	유가보조금	작년 한해
	Aa	경제 활동상태	당해 연도 1~4월
	Ba~Be	소득 및 연금/보험 관련 지출 현황	작년 한 해
	Ca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작년 한 해
	Da	소득공제현황(종합소득자)	작년 한 해

주: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측정 시점이며, 직업 및 출산여력은 일정 기간 동안의 이력을 조사함.

○ 용어별 조사 시점

<표 IV-8> 용어별 조사 시점

조사 차수	작년 한 해	작년 말	현재	당해 연도
1차년도	2007.1.1~2007.12.31	2007년 12월 31일	2008년 조사 시점	2008년
2차년도	2008.1.1~2008.12.31	2008년 12월 31일	2009년 조사 시점	2009년
3차년도	2009.1.1~2009.12.31	2009년 12월 31일	2010년 조사 시점	2010년
4차년도	2010.1.1~2010.12.31	2010년 12월 31일	2011년 5월 1일	2011년
5차년도	2011.1.1~2011.12.31	2011년 12월 31일	2012년 5월 1일	2012년
6차년도	2012.1.1~2012.12.31	2012년 12월 31일	2013년 5월 1일	2013년
7차년도	2013.1.1~2013.12.31	2013년 12월 31일	2014년 5월 1일	2014년
8차년도	2014.1.1~2014.12.31	2014년 12월 31일	2015년 5월 1일	2015년
9차년도	2015.1.1~2015.12.31	2015년 12월 31일	2016년 5월 1일	2016년
10차년도	2016.1.1~2016.12.31	2016년 12월 31일	2017년 5월 1일	2017년
11차년도	2017.1.1~2017.12.31	2017년 12월 31일	2018년 5월 1일	2018년
12차년도	2018.1.1~2018.12.31.	2018년 12월 31일	2019년 5월 1일	2019년
13차년도	2019.1.1~2019.12.31.	2019년 12월 31일	2020년 5월 1일	2020년
14차년도	2020.1.1~2020.12.31.	2020년 12월 31일	2021년 5월 1일	2021년
15차년도	2021.1.1~2021.12.31.	2021년 12월 31일	2022년 5월 1일	2022년

V

설문 항목별 유의사항

1~15차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User's guide

V. 설문 항목별 유의사항

1. 가구용 설문

가. 가구 기본 현황

○ (작년 말 기준)취업 중인 가구원 수¹⁵⁾

- 정기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에 종사 또는 일용직으로 일한 가구원의 수를 의미한다.
- 퇴직자, 무직자, 학생, 전업주부는 제외되며,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만 있었다면, 취업 중인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무급가족종사자는 4차년도 이후부터 취업중인 가구원에 포함되었고, 따라서 4 차년도부터 가구원 조사에 응답대상이 되었다.

○ 주말부부

- 6차년도부터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주말 부부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동 거하지 않았다면 비가구원에 포함된다. 다만, 기숙사나 사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비가구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추적조사하고 있다.
- 7차년도부터는 주말부부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을 구간이 아닌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고 있다(h_aa016).

○ 출생년월

15) 취업 중인 가구원 수와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은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원이다.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원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원이라는 지침을 두고 있으며, 이자소득자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더 큰 개념이다. 소득 활동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가구원용 설문 유의사항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길 바란다.

- 소득 활동: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 또는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돋는 경우(무급 가족종사자). 이자 및 배당소득, 양도소득의 경우 발생한 소득이 1백만 원 이상 일 때 소득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등록상의 출생년월 응답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 산출 시 이용해야한다.

○ 혼인상태

- 혼인상태의 측정시점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며, 1차~3차 조사까지는 선택문 항이 '① 기혼', '④ 미혼'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별 또는 이혼인 사례가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4차 조사 이후 '① 기혼(배우자 있음)', '② 기혼(사별, 이혼)', '④ 미혼(결혼 한 적 없음)'으로, 8차년도부터는 '① 기혼(배우자 있음)', '② 기혼(사별)', '③ 기혼(이혼)', '④ 미혼(결혼 한 적 없음)'으로 세분화되어 조사되었으므로 자료 사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혼인상태 선택문항은 차수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1> 차수별 혼인상태 선택문항

조사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15차
선택문항	① 기혼			① 기혼(배우자 있음)			① 기혼(배우자 있음)	
	-			② 기혼(사별, 이혼)			② 기혼(사별)	
	-			-			③ 기혼(이혼)	
	④ 미혼			④ 미혼(결혼한 적 없음)			④ 미혼(결혼한 적 없음)	

○ 가구주의 정의

- 재정패널 조사에서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며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가구주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세대주의 개념과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구주는 가구 내 사유에 의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구주 변동에 따라 다른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가 변경 될 수 있다.
- 가구주 변동사유는 '① 경제적 사유', '② 사망', '③ 가구주나 가구원의 전출 입', '④ 기타'로 구분된다.

○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는 1차~5차까지는 한자리 코드이었으나, 6차년도 이후부터 세분화를 위해 두 자리 코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①은 가구주, ②는 가구주의 배우자, ③은 자녀 등으로

부여하였는데, 가구주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만으로는 서열을 확인 할 수 없어 서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관계에 한하여 6차년도부터 두 자리 코드를 부여하였다.

- 두 자리 코드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자녀 혹은 그 배우자의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였다. 부여공식은 가구주의 자녀⁽³⁾ 중 첫째 자녀인 경우 ⑩, 둘째 자녀인 경우 ⑪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⁴⁾, 가구주 자녀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⁷⁾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 두 자리 코드가 부여되었더라도 데이터에는 한자리 코드도 함께 입력되어 있으니 5차 이전 데이터와 비교를 위해서는 한자리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 가구원 여부

- 가구원 정의에 따라 '① 가구원', '② 비가구원'으로 구분된다. 2차년도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1차년도) 가구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2차년도 가구원 목록에 나타난 개인이 발견되었으며, 클리닝 시점에서는 해당 가구원이 1차년도에 누락되었던 정확한 사유(분가/사망)를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9(모름/무응답)' 처리하였다.
- '② 비가구원'인 경우 기본적으로 가구원에게 부여되는 고유 ID인 PID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출산으로 인해 신규로 전입한 가구원(신생아)의 경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아 '② 비가구원'일지라도 PID를 부여한다.
- 기존 가구원이었다가 '② 비가구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PID는 부여하지 않지만, 기초정보인 출생년월,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가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다. 이런 경우 가구원 변동 여부(w_chg_)를 통해 비가구원이 된 사유('① 분가' 또는 '② 사망'), 가구원 변동 시기(w_chy_),(w_chm_)를 확인 할 수 있다.

○ 분가 사유(가구원 변동사유)

- 1차~3차 조사까지는 기타 선택 문항이 세분화¹⁶⁾되어있었으나, 4차 조사 이후

16) ⑫ (기타)가구 사정, ⑬ (기타)양육가구 바뀜, ⑭ (기타)해외, ⑮ (기타)가출, ⑯ (기타)요양기관, ⑰ (기타)원래 가구원 아님, ⑲ (기타)가족의 재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 분가 사유의 선택문항은 차수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2> 차수별 분가 사유 선택문항

조사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15차
선택 문항	① 혼인 ② 이혼 ③ 학업 및 진학 ④ 직장 및 취업 ⑤ 군입대 ⑥ (기타)가구 사정~ ⑦ (기타)가족의 재혼	① 혼인 ② 이혼 ③ 학업 및 진학 ④ 직장 및 취업 ⑤ 군입대 ⑥ 기타			

○ 최종 교육기관

- 교육기관 중 ‘① 안받았음(미취학 포함)’으로 응답한 가구원은 졸업여부의 빈 수값이 ‘missing’이다.

○ 졸업 여부

- 12차년도까지는 휴학일 경우 재학으로 처리하였으나, 13차년도부터는 ‘⑤ 휴학’ 선택문항이 추가되었다. 휴학한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수준은 재학이더라도 직업은 학생이 아닐 수 있다.

<표 V-3> 차수별 졸업여부 선택문항

조사 차수	1차~12차	13차~15차
선택 문항	① 재학(휴학) - ③ 졸업 ④ 수료 ⑤ 중퇴	① 재학 ② 졸업 ③ 수료 ④ 중퇴 ⑤ 휴학

○ 직업

- 가구원의 직업의 선택문항은 8차년도를 기준으로 ‘① 관리자’~‘⑯ 미취학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의하여야 할 것은 직업의 선택문항에 직업 코드(‘① 관리자’~‘⑯ 기타취업’)와 직업이 아닌 코드(‘⑰ 전업주부’, ‘⑱ 무직’, ‘⑲ 학생’, ‘⑳ 미취학아동’)가 모

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문항에 'missing'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가구원이 하나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선택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 직업의 선택문항은 1차~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이후 조사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5차 조사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구성을 수정하였다.
- 4차 조사의 선택문항은 '④ 판매/서비스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에 있어 5차 조사와 차이가 있으며, 1차~3차의 경우 '⑨직업군인'과 '⑯미취학 아동'이 직업 선택 문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 5차 조사 이후의 직업 선택 문항은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취업', '⑫ 전업주부', '⑬ 무직(퇴직)', '⑭ 학생', '⑯ 미취학아동'이다.
- 다만,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에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사 차수별 선택문항을 리코딩(recoding)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4> 차수별 직업 선택문항

조사 차수	1~3차	4차	5~15차
선택문항	①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사무종사자	사무종사자
	④ 판매/서비스종사자	판매/서비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⑤ -	-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	-	단순노무 종사자
	⑩ -	직업군인	직업군인
	⑪ 기타취업	기타취업	기타취업
	⑫ 전업주부	전업주부	전업주부
	⑬ 무직(퇴직)	무직(퇴직)	무직(퇴직)
	⑭ 학생	학생	학생
	⑮ -	미취학아동	미취학아동

○ 종사상 지위

- 종사상 지위는 직업이 있는 가구원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업주부, 무직(퇴직), 학생, 미취학 아동은 종사상지위의 변수값이 'missing'이다.
- 여러 가족이 급여를 받지 않고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가구원의 사업을 도울 경우 가구주 1인을 자영업자, 나머지 가구원은 무급 종사자로 간주하였다.
- 종사상 지위 선택문항은 5차 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있으며, 차수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5> 차수별 종사상 지위 선택문항

조사 차수	1~4차	5~15차
선택문항	① (임금 근로자)상용직, 임시직	① (임금 근로자)상용직
	-	② (임금 근로자)임시직
	③ (임금 근로자)일용직	③ (임금 근로자)일용직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나. 주택 및 자동차 · 오토바이 보유 현황

○ 주택의 형태

- ①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단독택지 위에 건축된 건물(다가구 주택 포함)
- ②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건축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
- ③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
- ④ 오피스텔: 사무실 겸용 주택의 형태
- ⑤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한 건물 내에 점포나 사무실, 주거시설의 형태
- ⑥ 원룸: 방 하나로 침실, 거실, 부엌, 식당을 겸하도록 설계한 주거 형태
- ⑦ 기타: 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주택의 형태

○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 ① 자가: 작년 한 해 동안 가구원으로 인정된 자가 소유주인 경우
- ⑤ 무상거주: 작년 한 해 동안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또는 사택 등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주택 가격

- 작년 말 기준 시가: 시장에서의 주택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응답 시점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한다.

- 작년 초 공시 가격: 국토교통부에 게시된 개별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의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따라서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응답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응답이 많이 발생한 항목이기도 하다. 응답 시점은 작년 초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월세

- 6차년도 클리닝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1년 또는 6개월 등의 단위) 경우가 발견되어 이를 포괄하기 위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6차년도 이후의 월세는 정기적인 경우 월 지출하는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연간 지출하는 금액을 조사하도록 수정하였다.
- 다만, 데이터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과 같이 월간 지출하는 금액 (ba008) 변수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 주택 규모

- 단독주택은 주택면적과 대지 면적(m^2)을 조사하였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은 총면적과 전용면적(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 조사 단위는 4차년도 조사까지는 '평' 단위로 응답받았으나,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위해 5차년도부터 ' m^2 ' 단위로 수정되었다.

○ (작년 한 해 기준)주택 구입

- 분양 받은 주택의 중도금을 넣고 있는 상태는 현재 보유한 것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중도금은 기타자산으로 처리하였다.

○ 재산세

- 5차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재산세는 6차년도 조사까지는 주택 및 토지, 건물 등의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명의자에게 고지된 재산세 금액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 전체에 부과된 재산세를 알고 있지만 공동명의자들에게 개별 부과된 재산세를 모르는 경우 공동명의자 수만큼 재산세 부과 금액을 나누어 기입하도록 하였다.

- 7차년도부터는 재산세 조사 방식을 변경하여 주택별로 재산세를 조사하도록 수정하였는데, 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에 있어 개별 주택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기준과 같이 명의자별로 조사하였다.

○ 자동차 보유

- 1~5차년도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으며, 자동차 보험료 납부 여부 및 유류비 지출 여부는 자동차 소유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6차년도 조사부터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명의와 관계없이 타 가구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도 작년 한 해 동안 이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응답하도록 하여 차이가 있다. 즉, 5차 이전의 경우 자동차가 모두 가구원 소유의 차량이었으나, 6차 조사 이후에는 자동차의 명의가 타 가구원인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유주 번호가 '90'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 7차년도 조사부터 장기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하였다. 단, 장기리스 차량에 한해 별도의 변수를 구성하지는 않고 구입년도의 경우 계약년도, 구입 가격의 경우 월평균 리스요금, 소유주 가구원번호의 경우 '91'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기리스 차량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 번호가 '91'로 입력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면 된다.
- 자동차 모델명은 코드북의 오픈코드 sheet를 참조하면 된다.

○ 소유주 가구원 번호

- 실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원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타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90'번 코드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 유류비

- 1~5차년도의 경우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보유현황을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타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보유 현황의 값은 'missing'이고, 유류비 지출은 값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 자동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토바이 항목의 측정 문항도 동일한 구조로 조사되었다. 단 가구원이 고용된 회사가 유류비용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구의 유류비 지출에서 제외된다.
- 1차년도의 유류비 지출은 '자가'인 경우에만 조사되었다.
- 5차년도 이후 조사에서는 유류비 지출을 각 유종마다 '자가'와 '영업'으로 구분하여 월평균 유류비 지출금액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2~4차년도의 경우 '자가'와 '영업'용으로 사용한 유류비 지출의 구분이 없이 총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자가'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모두 보유하고 같은 유종으로 지출한 경우 각각의 금액은 총액의 반으로 입력하였다(bb201~bb206).
- 12차년도부터 전기차량의 유류비 지출을 용도(자가/영업)와 시설(급속 충전 시설/완속 충전 시설)로 구분하여 이용 여부 및 월평균 이용 금액을 조사하였다.

○ 오토바이 보유

- 오토바이 보유현황의 경우 응답 빈도가 낮고, 분석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5차년도 조사부터 삭제되었다. 하지만 응답자들 중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8차년도에 다시 정식문항으로 삽입하였다.
- 오토바이 보유현황을 조사하지 않은 5~7차년도에는 오토바이 유류비와 보험료 지출에 대해 교통비의 차량유지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다. 가계 지출 현황

가계 지출 항목은 조사 변수와 생성 변수로 나눠진다. 우선 조사 변수는 통계청 분류 기준인 COICOP¹⁷⁾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고, 조사 주기가 1년이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 비용을 회상해야하는 것을 감안하여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생성 변수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응답자가 기입한 소득과 지출 변수를 합산하여 총 소득과 총 지출 값을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가계 월평균 총소득 및 월평균 소비지출

-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득 및 지출 파악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지출 항목을 묻기 전 대략적인 가계소득 및 지출을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가구원용 설문지의 소득 총합으로 산출한 가구 소득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1~3차 조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구간을, 4 차 조사부터 월평균 경상소득 금액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3차까지의 총소득 변수와 4차년도 이후 경상소득 변수가 서로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출 대상 기간

-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비용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지출 총액을 측정하였다.

<표 V-6> 응답 기준 기간별 지출 항목

구분	문항
월평균 지출 금액 측정	주거비(관리비, 공공요금), 식료품/외식, 주류비, 담배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연간 지출 총액 측정	주택수리비, 가전제품 구입비, 문화/체육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악기·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의류/잡화 및 장신구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여행 관련 지출비, 보육/교육비(공교육비·사교육비), 보건의료비, 혼인·장례·이사비, 기부금, 가사도우미 서비스비, 민간·건강보험료

17) 목적별 개인소비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작성된 국민계정체계 및 ILO 등에서 권고하는 소비지출 분류체계

○ 가구 연간 총 소득 및 총 지출

- 데이터의 h_inc와 h_exp 변수로, 아래 표의 항목들을 합산하여 제공한다.

<표 V - 7> 총소득 생성 시 이용 변수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분류5	변수
총 소득	재산 소득	근로소득			(p_bb002)
		사업소득			(p_bb006)
	재산 소득	임대소득			(p_bb008)
		이자 및 배당소득			(p_bb018)
		양도소득			(p_bb032)
	경상 소득	타 가구 이전 소득			(h_dd011 h_dd021 h_dd031 h_dd041 h_dd051 h_dd060 h_dd069 h_dd078 h_dd087 h_dd096)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h_ea004)
		주거급여			(h_ea015 h_ea017)
		정부지원 자녀양육 지원금	출산지원금		(h_ee107 h_ee114 h_ee121)
		아동수당			(h_ee421 h_ee426 h_ee431 h_ee436)
		民生세~대학원생 대상 정부지원금			(h_ee444 h_ee450 h_ee456 h_ee462 h_ee468 h_ee474)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급액			(h_ed008 h_ed014 h_ed044 h_ed055)
		유가환급금			(h_ga004 h_ga010 h_ga016 h_ga022)
		근로장려금			(h_ha006)
		자녀장려금			(h_hb002)
		유가보조금			(h_ja004)
		공적연 금	사회보험보조금		(p_ba005 p_ba008)
		개인퇴직연금	특수직 퇴직연금		(p_ba052 p_ba054 p_ba056 p_ba058 p_ba060 p_ba062 p_ba064 p_ba066)
		민간 연금보험	연금신탁/펀드/저축		(p_ba018)
			연금보험		(p_ba020)
			보장보험		(p_ba022)
			저축보험		(p_ba024)
			주택연금		(p_ba128)
			농지연금		(p_ba130)
		정부지원현금			(p_ba032 p_ba035 p_ba038 p_ba041)
		근로소득 환급금			(h_ia003 h_ia009 h_ia015 h_ia021)
		종소세 환급금			(h_ib003 h_ib009)
비경상 소득	경조사비				(h_da004)
	그 외 기타소득				(p_bb028)

<표 V - 8> 총지출 생성 시 이용 변수

분류1	분류2	분류4	변수
총 지 출	소비 지출	월세	(h_ba500 h_ba501)
		자동차 및 오토바이 유류비	(h_bb201 h_bb202 h_bb203 h_bb204 h_bb205 h_bb206 h_bb207 h_bb208 h_bc027 h_bc028)
		주거비	(h_cb004 h_cb006 h_cb008 h_cb010 h_cb012 h_cb014 h_cb016 h_cb018 h_cb021 h_cb048)
		식료품비	(h_cc002)
		외식비	(h_cc004)
		주류비	(h_cd002 h_cd004)
		담배구입비	(h_ce005 h_ce009 h_ce013)
		교통비	(h_cf002 h_cf004)
		통신비	(h_cg002 h_cg004 h_cg006 h_cg008 h_cg010)
		문화생활비	(h_ch002 h_ch004 h_ch006 h_ch009 h_ch011 h_ch013 h_ch026)
		가전제품구입비	(h_ci002 h_ci004 h_ci006 h_ci008 h_ci012 h_ci014 h_ci016)
		통신장비구입비	(h_cj002 h_cj004 h_cj006)
		가구구입비	(h_ck002 h_ck004 h_ck006 h_ck008)
		의류 및 잡화 구입비	(h_cl002 h_cl004 h_cl006)
		화장품 및 이미용비	(h_cm002 h_cm004)
	여행 관련 지출	여행 관련 지출	(h_cn007 h_cn010)
		교육비	(h_co006 h_co007 h_co008 h_co013 h_co014 h_co015 h_co020 h_co021 h_co022 h_co027 h_co028 h_co029)
		보건의료비	(h_cp003 h_cp005 h_cp007 h_cp009 h_cp011 h_cp013 h_cp022)
	비소비 지출	혼인장레이사비	(h_cq002 h_cq008 h_cq010 h_cq013 h_cq015)
		기부금	(h_cr005 h_cr008 h_cr011 h_cr014 h_cr017)
		가사도우미	(h_cs021 h_cs022 h_cs023)
		종합부동산세	(h_ba127 h_ba129)
		재산세	(5~6차: h_ba407 h_ba408 h_ba409 h_ba417 h_ba418 h_ba419 h_ba427 h_ba428 h_ba437 h_ba438 h_ba447) (7차~: h_ba457 h_ba458 h_ba467 h_ba468 h_ba570 h_ba572 h_ba574 h_ba576 h_ba578 h_ba580 h_ba711)
	기타지출	민간보험료	(h_ct002)
		건강보험료	(h_cu002)
		경조사비지출	(h_ca002)
		타 가구이전지출	(h_dc011 h_dc021 h_dc031 h_dc041 h_dc050 h_dc05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액	(h_ed007 h_ed013 h_ed043 h_ed054)
		공적연금	(p_bc013 p_bc015 p_bc017 p_bc019)
		고용보험료	(p_bc032)
		근로 결정세액	(p_ca301)
		종합 결정세액	(p_da301)
		부채상환액	(h_fc044 h_fc007 h_fc010 h_fc013 h_fc025)

○ 응답 단위

- 지출 비목 중 월평균 지출 금액의 응답 단위는 백원, 천원, 만원이며, 연간 지출액의 응답 단위는 만원이다.

○ 주거비(월평균)

-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요금은 공과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난방용 유류비는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개념이지만 월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 수리비(연간)

- 6차년도부터 추가된 신규 문항으로 이사에 의한 주택 수리비용은 이사비용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불박이장 시공 등과 같이 가구비용과 주택수리비용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도 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이사나 가구 구입에 수반되는 주택 수리는 다른 문항에서 조사하고 주택 수리 목적에 의한 지출 비용만 기입하도록 하였다.
- 주택 수리비는 연간 단위로 조사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식료품 및 외식비(월평균)

- 식료품 구입비용에 외식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배달 음식의 경우는 모두 외식에 포함된다. 단 초·중·고등학교의 급식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고 있다. 타 가구원과의 외식 횟수는 제외된 횟수이며, 1~5차년도의 해당사항 없음은 1인 가구에 해당된다.

○ 주류비(월평균)

- 주류비의 세부 분류는 각각의 주제 산출 시의 분류를 따랐으며 술집에서 소비한 것을 제외한 주류전문점 혹은 마트, 슈퍼 등에서 구입한 것만 조사한다. 술집에서 주류를 소비한 것은 주류비가 아닌 외식비에 포함되었다.
- 6차년도부터는 와인과 막걸리 등의 주류를 분리하여 조사하였으며, 데이터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기타 주류 합산변수(cd004)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 담배 구입비(월평균)

- 담배종류는 코드북의 오픈코드 sheet를 참고하기 바란다.

○ 통신비-인터넷 등(월평균)

- 1차 조사 시 유료방송(케이블/IPTV) 시청료는 문화생활비에 포함되었으나, 2차 조사 이후 통신비에 포함하고 있다.
- 6차년도부터 인터넷에 복합상품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포함된 복합상 품의 개별가격을 알고 있다면, 각각의 항목에 기입하고, 개별 지출 가격을 모른다면 인터넷 항목(cg001, cg002)에 기입하고 복합상품 항목을 별도(cg021~cg024)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통신비18)-휴대전화(월평균)

- 6차년도 조사에서는 휴대전화의 보유 대수를 조사하고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7차년도부터는 총 보유 대수와 타 가구원이 대신 요금을 납부해주고 있는 휴대전화가 있는지, 또 통신사별로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휴대전화 가입 통신사별 휴대전화 보유 대수의 6차년도 값은 생성된 변수이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 '-9(모름/무응답)' 처리되어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 문화체육비19)(연간)

- 문화체육비는 서적 등의 구입료나 박물관이나 공연, 영화 관람료 등을 조사하는 영역인데, 7차년도 조사까지는 월평균으로 측정하였으나, 응답자들이 월평균으로 지출비용을 환산하기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많아 8차년도 조사부터 연간 지출 비용을 응답하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1~7차년도 응답값을 연간으로 수정하여 데이터에 제공하고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8) 통신비 지출 현황 중 '기타' 항목 지출의 경우 사례 수가 위낙 적어 평균값이 다른 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으로 나타나는 항목이다. 이에 해석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19) 문화체육비의 지출 현황 중 '기타' 항목 지출의 경우 사례 수가 위낙 적어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으로 나타나는 항목이다. 이에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 가전제품 구입비(연간), 통신장비 구입비(연간)

- 디지털카메라는 가전제품 구입비에 포함되나 휴대전화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기타 통신장비 구입비는 통신장비 구입비에 포함된다.
- 6차년도 조사부터 디지털 카메라 및 카메라 관련 제품들을 별도의 문항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 2차년도부터 조사하던 전자레인지의 경우 응답 비율이 적어 6차년도부터 기타 가전제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 12차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적 관심의 증가로 공기청정기 보유 여부, 구입 및 렌탈 시기와 금액, 미세먼지 차단 및 감소를 위한 지출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가구, 악기, 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비(연간)

- 가구 구입비와 별개로 불박이장 시공과 같이 가구 구입과 인테리어비가 함께 소요된 경우 별도의 항목(ck005~ck006)으로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테리어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항목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 레저 장비 구입 비용의 경우 1차 조사 시 문화생활비에 포함하였으나 2차 조사부터 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 항목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차 조사의 경우 월평균 금액이지만 2차 조사 이후부터는 연간금액으로 조사 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 교육비(연간)

- 교육비는 가구원을 위해 지출된 교육비와 비가구원인 가족을 위해 지출된 교육비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따라서 가구원의 정의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지는데, 학업으로 인해 떨어져 사는 자녀(초중고생 및 미혼의 대학생)는 1차년도 조사에는 가구원이 아니었으나 2차 조사부터는 가구원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가구원 정의 차이에 따라 가구원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가구원이 아닌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 1차, 2차 조사 모두 가구원으로 인정되는(가구원 번호가 기입되어있는) 가족에게 지출한 공/사교육비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1차 조사에서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녀(가구원 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공교

육비나 사교육비의 금액은 1, 2차년도에서 현저히 다르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 소득공제유무에 따라서 '공교육비', '기타 공교육비'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3차 조사부터 급식비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 공교육비

- 공교육비 항목은 14차년도 기준 '① 수업료', '② 급식비', '③ 기타'로 조사하였으며, 각 항목의 지출비용 정의는 차수별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V-9> 차수별 공교육비 선택문항

정의		1차	2차	3~15차
① 수업료	교육기관 등록금	-	●	●
	정규 수업료	●	●	●
	교과서비, 방과 후 수업료	-	●	●
	급식비	-	●	-
② 급식비		-	-	●
③ 기타	급식비	●	-	-
	보충 교재비	●	●	●
	교복비	●	●	●

- 먼저, 1차년도의 경우 수업료에는 교육기관에 납부한 정규수업료만 포함되며, 급식비는 기타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보충 교재비와 보충 수업비, 교복비도 기타 항목에 포함되었다. 2차년도의 경우 수업료에는 등록금, 정규수업료, 교과서비,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가 포함되며, 기타에는 보충교재비와 교복비가 포함되었다. 3차년도 이후에는 수업료에 등록금, 정규수업료, 교과서비, 방과 후 수업료가 조사되었고, 급식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 공교육비 지출에서 공사립 구분은 '어린이집'의 공사립 구분 항목과 '유치원~대학원 이상' 교육기관의 공사립 구분 유형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11차년도부터 어린이집 공사립 구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공사립 구분은 11차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표 V-10> 교육기관별 국공립 응답범주

교육기관	응답범주
유치원~기타	① 국공립 ② 사립
어린이집	③ 국공립 ④ 사회복지법인 ⑤ 법인·단체 등 ⑥ 직장 ⑦ 가정 ⑧ 협동 ⑨ 민간

○ 학교 소재지

- 13차부터 재학 가구원의 교육기관 소재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 장학금 수급 여부 및 종류

- 교육 지출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13차년도부터 장학금 수급 여부 및 수급 장학금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 보건의료비(연간)

- 의료비는 직접 지불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원이 직접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구원이 지불한 돈이면 가구의 의료비 지출로 정의하여 응답받았다. 반대로, 가구원의 치료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타 가구원이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보건의료비로 보지 않고 타 가구 이전 소득 파트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 처방전 없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료품비로 조사한다.
- 치과진료비의 경우 1~2차년도의 경우 치아교정비라는 항목으로 치아 교정과 관련된 비용만 조사하였고, 교정을 제외한 치과 진료비는 외래 진료비에 포함하였다. 이것을 3차년도 조사부터 수정하여 모든 치과 진료비는 cp006~cp007 문항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 혼인·장례·이사비(연간)

- 혼인비용은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혼인이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구에서 지출된 돈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는 가구원이 아닌 함께 살지 않은 딸이나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이 가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응답하도록 하였다.

- 혼인한 사람이 비가구원인 경우(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한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며, 혼인한 사람이 2명 이상이여서 가구원과 비가구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작년 한 해 동안 2명의 자녀가 결혼하였는데, 한명의 자녀는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 자녀는 분가해서 살고 있는 경우 등)
- 혼인 관련 비용 마련 항목은 6차년도 조사부터 측정된 항목으로 6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주된 마련 방법'로 응답하였고(1순위만 응답), 7차년도 이후에는 3순위 마련 방법까지 응답하도록 수정하였다.

○ 기부금(연간)

-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에 정기적으로 내는 현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부의 성격이 있는 금액은 모두 조사되며, 한 가구원이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쳐서 조사하고, 여러 분야에 기부를 하였다면 각각의 경우를 조사하였다.
- 다만, 7차년도 조사부터 종교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 유형에 따라 코드를 세분화하였는데, 종교기관 기부금 중 '현금과 보시' 성격의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성금' 성격의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민간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연간)

- 5차년도 조사까지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에게만 조사하였던 문항으로, 소득이 없는 가구원이 지출한 민간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6차년도부터 가구 설문지에서 측정하였다.
-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1차~5차년도 민간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응답을 통해 변수(ct001, ct002/cu001, cu002)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 다만, 1차~5차년도의 경우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설문지의 해당 문항(민간보험: p_bc044~p_bc055/건강보험: p_bc023~p_bc028)의 값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지출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10차년도부터 각 가구원이 본인 명의로 계약한 민간보험의 유형과 그 불입금액을 조사하도록 변경되었다. 민간 보험 유형은 '① 퇴직연금', '② 연금저축', '③ 연금보험', '④ 보장보험(질병/상해/사망)', 그리고 '⑤ 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라. 타 가구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조사 차수마다 이전지출과 이전소득에 대한 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각 차수마다 정의하는 이전지출과 이전소득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타 가구 이전 지출 및 소득의 정의

-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등의 월세를 대신 받고 있는 경우 명의 보유자로부터 이전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고, 개인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금액도 이전 지출 및 소득으로 간주하였다. 단, 4차년도 조사부터 가구 설문 문항 중 증여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여와 이전 소득 및 이전 지출과의 개념과 분리하기 위하여 재산 증식 수준 이하의 금액을 주고받은 경우라는 지침을 추가하였다.

○ 연간 총액

- 1차년도: 정기적으로 주고받은 금액만을 묻고 있어 연간 1회만 발생한 지출 및 소득은 조사되지 않았다.
- 2차년도 이후: 연간 1회만 발생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출 및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간 총액으로 조사하였다.

○ 타 가구원 인적사항

- 3차년도부터는 타 가구 이전 지출에서는 타 가구에서 받은 사람의 성별, 거주 지역, 교육수준, 소득유무 등의 인적정보를, 타 가구 이전 소득에서는 타 가구에서 주는 사람의 인적정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 이혼한 전 배우자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받은 소득은 1차~4차년도의 경우 별도의 문항(de001~de004)으로 분리하여 조사되었다.
- 이 문항은 5차년도 조사부터 타 가구 이전지출 및 소득 파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혼한 전배우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 타 가구 거주 부모 정보(5차년도 부가 조사)

- 5차년도 조사에서는 부가 조사의 형태로 타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이전지출과 이전소득에서 타 가구원인 부모에게 용돈 및 생활비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다만, 타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의 정보는 수집이 까다롭고, 한번 조사하면 계속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 조사의 형태로 5차년도 조사 시점에 1회 조사하도록 설계하였다. 부모에 대한 정보는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고, 작년 한 해 동안 생존하였던 부모의 출생년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 타 가구원과의 관계(이전지출 및 소득)

- 이전지출의 대상과 이전소득의 대상을 가구주와의 관계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가구주와의 관계가 다양화되고 있어 조사 차수마다 응답범주의 차이가 존재한다.
- 다만,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에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사 차수별 선택 문항을 리코딩(recoding)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11> 차수별 타 가구원과의 관계 응답 범주

구분	1차	2차	3~4차	5~8차	9~15차
응답범주	① -	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② -	-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③ 부모	부모	부모	부모	부모
	④ -	-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⑤ 자녀 (손자녀 포함)	자녀	자녀	자녀	자녀
	⑥ -	손자녀	손자녀	손자녀	손자녀
	⑦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⑧ -	-	-	-	자녀의 배우자
	⑨ 비혈연	비혈연	비혈연	비혈연	비혈연
	⑩ -	-	-	이혼한 전 배우자	이혼한 전 배우자
	⑪ 기타 친인척	기타 친인척	기타 친인척	기타 친인척	기타 친인척

마. 상속

○ 일생동안의 상속

- 상속문항은 3차년도부터 조사하였으며, 3차년도 이전의 누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작년 한 해까지 가구원이 일생동안 상속받은 내용을 모두 조사하였다.

○ 작년 한 해 동안의 상속

- 4차년도 이후 조사부터는 상속 정보를 누적하여 조사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상속 내용을 조사하였다.
- 5차년도 이후 조사부터는 가구 내에서 이루어진 상속 정보도 측정하였다.

<표 V-12> 차수별 상속 응답 구분

구분	3차	4차	5~15차
타 가구원 → 가구원 상속	●	●	●
가구원 → 타 가구원 상속	●	●	●
가구원 → 가구원 상속	-	-	●

○ 타 가구에서 주는 사람(상속)

-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에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사 차수별 선택문항을 리코딩(recoding)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13> 차수별 타 가구원과의 관계 응답 범주

조사 차수	3차	4~5차	6~15차
선택문항	① 조부	조부	조부
	② 조모	조모	조모
	③ 부	부	부
	④ 모	모	모
	⑤ -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부
	⑥ -	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모
	⑦ 배우자	-	배우자
	⑧ 기타 친인척	기타 친인척	기타 친인척

- 3차년도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⑧ 기타 친인척'으로 포함되었으며, 4~5차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가 '⑧ 기타 친인척'으로 포함되었었다. 6차년도 이후 조사에서는 앞선 조사의 누락내용을 보완하고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정보를 모두 선택문항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 현금 사용 용도

- 7차년도부터 현금으로 상속받은 경우, 사용 용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① 주택구입', '② 자동차구입', '③ 건물구입', '④ 결혼자금', '⑤ 유학비', '⑥ 사업자금', '⑦ 생활비(이전소득보다 큰 규모)', '⑧ 전자제품', '⑨ 저축', '⑩ 기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증여

○ 일생동안의 증여

- 증여문항은 4차년도부터 조사하였으며, 4차년도 이전의 누락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작년 한 해까지 가구원이 일생동안 증여받은 내용을 모두 조사하였다.

○ 작년 한 해 동안의 증여

- 5차년도 이후 조사부터는 상속 정보를 누적하여 조사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증여 내용을 타 가구원 증여, 가구원 증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타 가구원과의 관계

- 가구원에게 증여해 준 타 가구원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증여받은 타 가구원의 관계는 조사 차수마다 차이가 있다.
- 4차년도의 경우 '⑦ 배우자'가 '⑧ 기타 친인척'에 포함되어 있으며, 5차의 경우 '⑨ 비혈연' 코드가 추가되었다. 6차년도부터 앞선 조사의 누락내용을 보완하고자 배우자 및 비혈연 코드를 모두 선택 문항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으며 7차년도부터 '⑧ 자녀', '⑨ 형제자매'가 추가되었다.
- 다만,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에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사 차수별 선택 문항을 리코딩(recoding)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14> 차수별 타 가구원과의 관계 응답 범주

조사 차수	4차	5~6차	7~15차
선택 문항	① 조부	조부	조부
	② 조모	조모	조모
	③ 부	부	부
	④ 모	모	모
	⑤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부
	⑥ 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모
	⑦ -	-	배우자
	⑧ -	-	자녀
	⑨ -	-	형제자매
	⑩ -	기타 친인척	기타 친인척
	⑪ -	비혈연	비혈연

사. 복지현황

복지현황에서 측정하는 정부지원현금의 경우 지원하는 단위가 가구와 가구원(개인)으로 나뉠 수 있다.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정부지원현금은 가구에서,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부지원현금은 가구원의 설문지에서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1차~3차년도의 경우 가구 설문지에서 모든 정부지원현금 내역(가구 및 가구원의 수급기간, 수급액)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구 단위 지급)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다.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뉘는데, 일반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현금급여에 해당하며,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 대상이 된다.
- 5차년도 조사부터는 의료급여에 대한 조사를 신규로 추가하여 측정하고 있다.

○ 고령층 정부지원금(가구원 단위 지급)

- 고령층 정부지원금의 경우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지만 1차~3차 조사까지는 고령층 정부지원금 파트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수급액을 조사하였다.



- 1차~3차에서 조사된 고령층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표 V-15> 차수별 고령층 정부지원금 선택 문항

조사 차수		1차	2차	3차
선택문항	①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②	경로연금	-	-
	③	노인교통비	노인교통비	-

- 4차년도 조사 이후에서는 가구원 설문지(p_ba029~p_ba038)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 기초노령연금(가구원 단위 지급, 2차부터 조사)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차년도 조사부터 선택문항에 포함되었다.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의 폐지, 기초연금의 도입에 따라 8차년도(2015년) 조사문항에는 용어를 수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을 대상으로 하는 7차년도 조사까지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에 유의해야한다.

○ 경로연금(가구원 단위 지급, 1차만 조사)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폐지되었다.
- 2차년도 조사부터 선택문항에서 삭제되었다.

○ 노인교통비(가구원 단위 지급, 1~2차만 조사)

-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로 기초노령연금의 신설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 3차년도 조사부터 선택문항에서 삭제되었다.

○ 그 외 정부지원현금(가구 또는 가구원 단위 지급)

- 1~3차 조사까지는 그 외 정부지원현금에 농어업정부보조금, 자녀양육지원금, 장애수당, 보훈수당, 기타 정부지원현금 수급액을 조사하였다.

<표 V-16> 차수별 그 외 정부지원현금 선택문항

조사 차수		1차	2차	3차
선택문항	①	농어업정부보조금	농어업정부보조금	농어업정부보조금
	②	-	자녀양육지원금	자녀양육지원금
	③	-	장애인수당	장애인수당
	④	-	보훈수당	보훈수당
	⑤	기타	기타	기타

○ 농어업 정부 보조금(가구원 단위 지급)

- 농어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 장애수당(가구원 단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경증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 장애인연금(가구원 단위 지급)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제도로, 중복수급은 불가하며,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수급도 불가하여 만 65세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리가 상실된다.
- 수급 대상자는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 특수직역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 보훈수당(가구원 단위 지급)

-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마련해

주는 일련의 보상제도로 보상금·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가구 단위 지급으로 처리)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형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4차년도 조사부터 정식조사문항으로 구축되어 2010년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수급 내역부터 조사되었다. 누락된 2009년의 수급내역은 4차년도에 부가 조사의 형태로 추가 조사하였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는 가구원 단위로 지급되는 정부지원현금이지만, 그 대상이 되는 가구원이 직접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구 단위 지급으로 처리하여 가구 조사에서 가구주 등이 대신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양육(출산) 및 교육 지원금(가구 단위 지급)

-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진료비, 아동수당, 보육비, 교육비, 급식비, 다자녀지원금 등이 있다.
- 자녀양육 지원금은 4차년도 조사부터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 특히, 6차년도 조사부터 출산 관련 지원금 0~5세 자녀에 대한 지원금, 6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 코로나19 지원금(가구 단위 지급)

- 2020년 코로나19 발병으로 국민 생계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한 정부 지원금으로 기본소득형, 생계지원형, 재난피해지원형, 소득 및 일자리지원형, 기타 인센티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기타 현물 지원(가구 단위 지급)

- 5차년도 조사부터 현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바우처, 식료품, 기타재화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물의 가치를 측정

하고 있다.

- 기타 현물 지원 내역에는 자녀양육지원금에서 응답한 바우처 등은 제외된다.

아. 자산 및 부채 현황

◎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항목에 따라 평가액을 조사하되, 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납부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 조사 차수별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V-17> 차수별 금융자산 조사 항목

조사 차수		1차	2~8차	9~13차	14~15차
조사 항목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	●	●	●
	주식	●	●	●	●
	채권	●	●	●	●
	펀드	●	●	●	●
	저축성 보험 및 연금성 보험	-	●	●	●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	-	●	●
	가상화폐	-	-	-	●
	빌려준 돈	●	●	●	●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펀드 연간 납부금액	●	●	●	●
기타 금융자산		●	●	●	●

○ 펀드 가입금액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등 펀드의 총 평가액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펀드를 조사한다.

○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 2차년도부터 조사된 항목으로 기존 기타 금융자산에 포함되었던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과 같이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보장이 주목적인 저축성 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뜻한다. 질병, 상해, 생명, 운전자, 배상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 만기나 보험료를 환급 받더라도 보험의 성격이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금융자산 항목에 조사하지 않았다. 단 저축성과 보장성의 구분이 어렵거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저축성 보험으로 간주하였다.

○ 기타 금융자산

- 1차 조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 총 불입액과 연금성 금융상품 총 불입액, 연금보험 총 불입액 등이 포함되며, 2차 조사 이후 저축성 보험 및 연금성 보험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기타 금융자산에는 신탁과 연금저축/연금펀드, 아직 타지 않은 계에 불입한 돈 등이 포함된다. 기타 금융자산은 평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사년도 말까지 납입한 총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 주택마련저축/펀드 연간 납부금액

-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 저축만 해당되며,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항목이나 펀드가입 금액이 포함된다. 그 중 조사년 기준 전년 연간 납부 금액은 별도의 문항으로 따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 부동산 및 기타자산

- 가구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및 기타자산의 작년 12월 말 총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부동산 자산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나뉘어 조사하였다.
- 귀금속 자산의 경우 본래 정식 문항은 아니었으나 기타자산의 응답으로 그 번도수가 높아 2014년 데이터 공개 시점부터 정식문항으로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 조사 차수별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V-18> 차수별 부동산 및 기타자산 조사 항목

조사 차수	1차	2~10차	11~15차
조사 항목	현재 거주주택	●	●
	현재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	●
	주택 이외의 보유 부동산 총액	●	●
	토지	-	●
	건물(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	●
	보유 회원권(클프, 콘도 등)	●	●
	농기계, 가축	●	●
	선박, 건설중장비	●	●
	귀금속	●	●
	자동차 현재 시가	-	-
	기타자산	●	●
	전·월세 보증금 총액	●	●
	가구원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	●
	비가구원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	●
	주택 이외 건물의 전·월세 보증금	-	●

○ 가구원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예를 들어 미혼의 대학생인 자녀가 전세를 얻어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경우)의 전 월세 보증금을 조사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주택 보유현황에서 전월세 보증금 보다 크거나 같은 응답값을 갖는다.

○ 비가구원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

- 명의를 기준으로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정의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비가구원) 등에게 얻어 준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주택이 자가인 경우에도 응답값이 있을 수 있다.

○ 부채

- 부채 또한 명의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작년 12월 말의 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본인의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부채를 진 경우에도 부채가 가구원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채 현황에 포함된다.

- 부채금액은 1~5차년도의 조사의 경우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원금만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부터 응답하는 값이 '① 원리금'인지, '② 원금'인지, '③ 이자'인지 구분하도록 하였다.

<표 V-19> 차수별 부채 조사 항목

조사 차수		1~2차	3~4차	5~15차
조사 항목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	●	●
	학자금 대출	●	●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	●	●
	금융기관 대출	●	●	●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	●	●
	신용카드 관련 대출	-	-	●
	기타	●	●	●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 3차 조사부터 금융기관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과 그 외 금융기관 대출로 분리하여 조사하였고, 금융기관 대출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제2금융권 대출액 중 다른 항목에서 측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채금액을 조사한다.
-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신규 삽입됨에 따라 5차년도부터 카드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액은 별도로 조사하였다.

○ 신용카드 관련 대출

-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을 의미하며, 5차년도부터 조사되었다.
- 단, 신용카드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기타 부채

- 사채 혹은 이미 탄 계 등이 포함된다. 단순 빚보증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 부채상환의 어려움

- 6차년도부터 신설되어 조사된 영역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응답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채의 종류가 전월세 보증금 유형만 있는 경우 응답하지 않도록 하였다.
- 7차년도부터는 연체 상황을 중심으로 조사문항의 구조를 약간 변동하였는데, 6차년도에 조사한 문항과 차이는 없으나 연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장 처음에 조사하는 것으로 변동되었다. 따라서 6차년도와 7차년도의 문항을 비교할 때에는 조사 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환급금 및 정부보조금 현황

○ 유가환급금

- 2~3차 조사에만 측정되었으며, 1인당 최대 24만 원까지 지급되나, 가구 전체를 합칠 경우 24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을 수 있다.
- 유가환급금액을 조사한 시기는 2차와 3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차 조사에서는 유가환급금이 폐지됨에 따라 조사하지 않는다.
- 2차: 작년 11월~12월 중 지급받은 유가환급금
- 3차: 작년 5월 중 지급받은 유가환급금

○ 근로장려금²⁰⁾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의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요건은 매년 차이가 있다.

20)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은 14차년도 조사 대상년도(2020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자가 대상이 된다.

- ① 가족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②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③ 재산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3차부터 조사하였다. 3차에는 근로장려금 수령 후 근로에 대한 의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측정하였는데, ‘① 더 근로함’, ‘② 더 근로안 함’, ‘③ 관계없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4차 조사 이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령 후 근로시간의 변화를 ‘① 대폭 줄어듦’, ‘② 약간 줄어듦’,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늘어남’, ‘⑤ 대폭 늘어남’으로 수정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였다.

○ 자녀장려금²¹⁾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10차년도부터 지급받은 총액으로 조사하고 있다.

○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 연말정산환급금은 조사 대상 기간(작년 한 해) 동안 돌려받은 소득세환급금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기간 이전해의 원천징수하였다가 환급받은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13차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 원천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후 2019년 돌려받은 금액을 조사한다.
- 종합소득세환급금도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환급받은 초과자진납부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 유가보조금

-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2006년 6월의 기간 동안 시행된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데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을 보유한 운수사업자 혹은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그 대상이 되며, 3차년도 조사부터 조사되었다.

21)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은 14차년도 조사 대상년도(2020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는다.

① 부양자녀 요건: 입양자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존재
 ② 총 소득 요건: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
 ③ 주택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출산에 따른 비용 지출

- 작년 한 해 동안 출산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으로 작년 한 해 출산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료기관 지출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위한 지출비,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이용비)과 출산 정보(분만형태, 수유방법, 모유수유기간, 출산 전 취업상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모두 조사한다. 이때, 해당 지출이 작년 한 해 이전기간이 이루어졌다하여도 모두 기입하도록 한다. 즉, 14차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 1월에 출산한 가구원이 있다면, 그 가구원의 출산을 위해 2019년부터 지출된 의료기관 지출비 등도 모두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 출산 이력(부가 조사)

- 6차년도 부가 조사의 형태로 조사된 출산 이력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현재 가구원의 출산 경험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조사이다.
- 다만, 현재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가구원 상태였던 경우의 출산 이력은 조사되지 않으며,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산된 가구원의 부모가 가구원이 아니라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출산 이력은 출산에 대한 정보 및 출산 가구원의 근로정보, 출산 아동의 보육 시설 및 돌봄 상태,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까지 조사하였다.
- 7차년도에는 6차년도 조사 미참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행하였는데, 2008년~2012년 사이 출산을 경험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응답하도록 하였다. 출산 이력은 별도의 데이터 파일로 분리되어 있으며, 6차년도와 7차년도 응답 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7차년도에 출산 이력을 응답한 가구는 7건이다.

2. 가구원용 설문

가. 조사 적격 가구원 선정

○ 무급가족종사자

- 무급가족종사자는 4차년도 조사 이후 소득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가구원으로 판단하여 가구원 조사 적격 가구원으로 선정하였다. 1~3차 조사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이자 및 배당소득자

-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가구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일 때 가구원 설문지 응답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자로 정의하였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가구원 소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양도소득자

- 6차년도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 양도소득만 있는 가구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일 때 가구원 설문지 응답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자로 정의하였다. 다만,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의 양도소득도 가구원 소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만 20~39세 기혼여성 및 배우자

- 4차년도 조사에서 부가 조사 문항으로 정부 출산 지원 시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도록 추가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4차년도 조사에 한하여 만 20~39세 기혼 여성 및 배우자에게 가구원 설문지 “F.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영역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경제활동

○ 경제활동 조사 시점

- 다른 항목 시점이 모두 지난해임에 반해 이 항목만은 조사 시점(당해년도 5월 1일 기준)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하여 묻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소득 활동

- 소득, 이익, 봉급 등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금융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휴직자

- 6차년도 조사부터 휴직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 소득 활동에 있어 유급 휴직자 및 3개월 미만의 무급 휴직자인 경우 소득 활동 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3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인 경우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V-20> 급여 및 휴직기간에 따른 소득 활동자 여부

급여 유무	휴직 기간	소득 활동자 여부
유급	3개월 미만	소득 활동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자
무급	3개월 미만	소득 활동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자 아님

○ 임금근로자

-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뜻하며, 그 어떠한 경우일 지라도 정규적인 임금을 받는다면 임금노동자에 포함된다. 즉,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돋는다 하더라도 용돈이나 수고비 등 어떠한 상태로든 정규적인 비용을 받는다면, 임금노동자로 간주된다.



○ 상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임시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으로 정의하였다.

○ 일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5월 1일을 기준으로 1주일간 일한 평균 근로 시간을 물어보았다. 단, 교대제의 경우 일중 근무시간이 24시간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연금·보험 소득

○ 보훈연금(국가유공자보훈연금)

- 보훈연금은 가구원 단위로 지급되는 정부지원현금이지만, 1~3차 조사의 경우 사회보험 소득 파트에서 측정되었다.
- 다만,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에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지원현금 파트(p_ba030~p_ba038)에서 분석되도록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 퇴직관련 연금

- 8차년도 조사부터 작년 한 해 동안 수령한 특수직연금의 퇴직연금과民間연금의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의 퇴직관련 연금은 별도의 조사페이지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 민간연금 및 민간보험 급여

- 퇴직연금,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저축, 연금보험, 보장보험(질병/상해/사망), 저축보험,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보험 급여를 측정하는 문항이며, 주택연금 수급여부 및 금액은 4차조사 이후부터 삽입되었다. 5차조사부터는 농지연금에 대한 문항도 추가하여 조사되었다.

라. 정부지원 현금 소득

- 가구원 단위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현금 소득은 가구원용 설문지에서 측정된다. 그 종류는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보훈연금), 기초노령연금, 농어업정부보조금(쌀 직불금 포함),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기타수당이며, 수급기간 및 연간 총금액을 조사하였다.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자녀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기타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 다만, 1~3차의 경우 국가유공자보훈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지원 현금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지원 현금 소득 변수(p_ba030~p_ba038)에는 국가유공자보훈연금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존재한다.

마. 연간 소득

○ 연간 소득 기본적 사항

- 모든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연금·보험 소득은 이미 앞 문항에서 조사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자 연간 소득에서는 제외해 조사하였다.
- 용돈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은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비가구원으로부터 받은 용돈은 연간 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측정된다.

○ 근로소득

- 기본급과 보너스, 수당 등 직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매출과 순소득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나뉜다.
- 순소득이란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얻는 총 수입(매출액) 중 경영을 위한 일반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및 사업이윤을 말한다.
- 사업 소득에서 매출액이 있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순소득이 '0'원이거나 적자를 본 경우 사업소득 순소득 유무는 '② 아니오'로 기입하고, 연간 순소득 금액의 변수값은 'missing'이다.

○ 부동산임대소득(토지, 주택, 상가 및 사무실, 기타)

- 건물이나 임야, 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월세나 임대소득으로 1~3차년도의 경우 하나의 문항으로 조사하였고, 4차년도 조사이후부터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 이자 및 배당소득

- 이자수입, 보험/신탁/주식 등의 배당으로 생긴 수입으로 연 1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한다.

○ 기타 소득²²⁾

- 조사 차수별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22) 기타 소득의 '그 외 기타 소득'의 경우 상대표준오차가 25% 이상으로 나타나는 항목이다. 이에 해석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표 V-21> 차수별 기타 소득 조사 항목

조사 차수		1차	2~3차	4~15차
조사 항목	가구 외부에서 받은 용돈, 생활비, 학비	-	●	●
	노인요양특별급여	-	-	●
	정부지원 현금	-	●	-
	그 외 기타 소득(경조사 소득, 당첨금 등)	●	●	●
	사적이전소득(상속받은 재산, 증여로 받은 재산)	●	-	-

- 1차년도 조사의 경우 기타소득의 금액에 사적이전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하나의 변수(p_bb029~p_bb030)으로 제공하고 있다.
- 2차년도 조사와 3차년도 조사에서는 기타소득을 가구 외부에서 받은 용돈, 생활비, 학비(p_bb019~p_bb020)와 정부지원현금 소득(p_bb023~p_bb024), 그 외 기타 소득(p_bb027~p_bb028)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4차년도 조사 이후부터는 노인요양특별급여(p_bb025~p_bb026)를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 4차년도 조사의 경우 “정부지원 현금 소득” 설문 문항이 추가됨에 따라 2차와 3차 조사에서 기타소득 중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한 정부지원 현금 항목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가구원 개인의 연간 정부지원 현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2차와 3차의 경우 기타소득 항목 중 “정부지원 현금” 항목을, 4차 이후의 경우 기타소득 항목 중 “노인요양특별급여”항목과 정부지원 현금 조사영역에서의 급여 총액을 합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 경조사 소득은 그 외 기타 소득에 포함되며, 혼인 등으로 인한 경조사 소득 중 누구의 명의인지 불분명 한 경우 가구주의 가구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가구의 소득이 ‘그 외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가구원 응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

- 6차년도부터 조사된 양도소득은 본인 명의 자본증권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누적

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 다만, 6차년도에는 손실은 조사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7차년도의 경우 소득과 손실 금액을 모두 조사하도록 하였다.
- 6차년도부터 13차년도까지는 양도소득 전체를 조사하였으나 14차년도부터는 유가증권 종류(국내주식·해외주식·채권, 펀드 및 기타 유가증권·가상화폐)에 따라 소득과 손실 금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표 V-22> 차수별 양도소득 조사 항목

조사 차수	6차	7~13차	14~15차
조사 항목	양도 소득	●	●
	양도 손실	-	●
	국내 주식 소득/손실	-	-
	해외 주식 소득/손실	-	-
	채권, 펀드 및 기타 유가증권 소득/손실	-	-
	가상화폐 소득/손실	-	●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양도소득만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야 소득 활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연간 소득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에서의 양도소득은 금액의 제한 없이 발생한 모든 금액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활동 없이 주식매매 차액이 유일한 소득이 가구원이 있다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은 제한 없이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여 조사한다.)

바. 연금·보험관련 지출 현황

○ 공적연금

-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조사하되, 2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의 가입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 가입자로 나누어 납부 금액을 조사한다.

- 공적연금의 조사방식은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납부 유예 및 연체 등을 이유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납부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차년도 조사에서는 가입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차이가 있다.
- 1차~2차년도 조사까지는 공적연금 납부액은 연간 단위로 조사하였으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평균 금액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가구원은 공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적연금의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중복가입이 불가하나, 재정패널 조사의 경우 지난 1년 간의 가입상태를 조사하므로 직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 1년 동안 2개의 공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하여 자영업을 하는 경우 1년 동안 공무원 연금 납부금액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단, 3차 조사 이후 조사한 공적연금 납부기간은 1년(12개월)을 넘지 않는다.
- 은퇴 후의 공적연금 예상 수급액을 조사하는 문항은 7차년도부터 조사한 문항으로 국민연금공단(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특수직역 연금공단)으로부터 고지 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2차년도부터 조사한 희망 연금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은 '① 직장가입자'와 '②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나, 1차년도 조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으로 조사하였다.

○ 고용보험료

- 자영업자가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민간보험 및 민간연금 정의

- 퇴직연금: 근로자가 월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퇴직 시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 연금저축/펀드/신탁: 55세나 60세 등 특정연령이 지난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으로 은행권의 연금신탁이나 투신사의 연금펀드 등이 해당된다. 보통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며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다.
- 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을 의미한다.
- 보장보험: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 저축보험/연금보험: 3년, 5년, 10년 등 중단기간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장의 성격이 있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 민간보험이나 민간연금에 불입한 돈은 본인의 명의로 계약해서 낸 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계약해서 납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남편의 보험지출로 간주한다.

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직불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을 합쳐서 측정하되, 법인카드의 사용액과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에 해당하지 않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 카드론,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였음에 유의해야한다.
-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측정하였다.
- 이 항목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순수 본인 명의로 된 지출만을 포함하므로, 근로소득 공제현황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현황의 계산으로는 쓰일 수 없다.
- 1~5차년도 조사에서는 국내 사용액만을 조사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부터는 신용 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을 국내 사용액과 해외 사용액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6차년도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을 조사하였다. 7차년도부터는 대중교통 사용액을 조사하였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전혀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을 '0'원으로 측정하였다.

아. 소득세 유형 및 소득·세액 공제 현황

○ 소득증빙서류 제출에 따라 응답 방식 차이

-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소득 및 세액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공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서류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서류 제출자의 소득 및 세액 공제 현황은 서류를 바탕으로 입력된 값이며, 서류 미제출자는 본인의 회상에 의한 응답 값임에 유의해야한다.

○ 자료 제출자 확인

- 소득공제 현황 자료 제출자는 p_a13 변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도 있다.

○ 변수명 및 정의 변경

- 8차년도 조사부터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1~7차년도에 제공하던 변수명을 재부여 하였다. 수정된 변수명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ca201부터 시작되고, 종합소득자의 경우 da203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공적연금보험료 공제금액 항목은 2015년 제공된 데이터에서는 ca102이었으나, 2016년 이후 제공되는 데이터부터 ca206변수로 수정되었다.
- 반면, 동일한 변수이지만 정의가 변경된 경우도 있는데,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료 공제액의 경우(p_ca210), 1~7차년도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을 의미하지만 8차년도부터는 세액공제금액을 의미한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동시 존재

- 8차년도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중 기부금과 기타 항목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변수가 각각 존재한다. 기부금의 경우 2014년 귀속 공제금액 중 이월된 금액은 소득공제로, 2014년 발생한 금액은 세액공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기타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가 모두 존재한다.

<표 V-23> 변수별 공제 항목(14차년도 기준)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 소득	공적연금 보험, 보험,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자, <u>기타</u>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u>기부금</u> , <u>기타</u>
종합 소득	공적연금 보험,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u>기타</u>	<u>기부금</u> , 표준공제, <u>기타</u>

○ 차수별 소득공제 조사 항목

-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은 측정이 쉽지 않고, 조사된 내용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 6차년도부터 종합소득공제 항목 중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해당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기주식형 저축 공제항목은 2014년 귀속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8차년도부터 조사되지 않는다.
- 상세 조사 항목은 다음의 <표 V-19>과 같다.

<표 V-24> 차수별 소득공제 현황 조사 항목

구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조사 항목	공적연금 보험료,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월세,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 기타 공제, 결정세액	공적연금 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등, 표준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기타 공제, 성실사업자대상공제(의료비, 교육비), 결정세액

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4차년도 부가 조사)

- 2011년 5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20-30대(1972~1991년 출생) 기혼 여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영역을 부가 조사의 형태로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 설문 영역은 5차년도 조사부터는 조사되지 않았다.
-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은 결혼 횟수, 현재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 수, 자녀계획,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며, 응답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원이라면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이 영역에는 응답하였다.

차. 직업 이력(6차년도 부가 조사)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에 대해서 부가 조사의 형태로 6차년도 조사 시점에 측정하였다. 직업 이력도 출산 이력과 마찬가지로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7차년도에 추가 조사를 실행하였는데, 이때 총 63명이 응답하였다.
- 조사 대상이 되는 직업 정의
 - 직업은 1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소득 활동에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된다.
 - 단,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일자리가 2003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부터 기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자의 시작시기가 2003년 이후는 아닌 경우도 있다.
 - 동일한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한 일자를 조사하였고, 동일한 시간을 투입한 경우라면,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를 조사하였다(주된 일자리).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무처가 자주 바뀌는 공사현장 근로자 등의 경우 하나의 일자리로 인정하되,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은 평균값으로 조사하였다.
 - 동일한 일자리에서 종사상 지위가 변동되었거나, 월평균 소득 등이 달라진 경우 종사상지위는 일자가 종료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월평균

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은 근무 기간 동안의 평균값으로 기입하였다.

○ 은퇴

- 직업이력에서 의미하는 은퇴란 근로 및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가구원 의식 조사(9차년도 이후 계속 조사)

- 의식 조사는 3차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사 차수마다 측정한 의식 조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V-25> 차수별 의식 조사 조사영역

조사 차수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조사 영역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	●	-	-	-	-
	조세제도인식	●	●	●	●	●	●
	복지정책인식	-	-	●	●	●	●
	타인에 대한 신뢰	-	-	-	-	●	●
	건강 및 수명	-	-	-	-	-	●

- 가구원 조사 문항의 일부로 조사하던 의식 조사를 9차년도부터 문항을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설문 영역으로 생성하고, 계속 조사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 가구원 의식 조사는 조사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응답을 받아야 하는 설문 영역으로 대리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가구원 의식 조사 문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가 존재하며, 가구원용 설문지에 대해 응답하고 가구원 의식 조사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함에 유의해야한다.
 - 13차년도 기준 가구원 의식 조사 응답비율은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의 61.4% (14,204명)이다.

- 9차년도 의식 조사에서는 'a.사회·정치', 'b.조세·복지제도', 'c.납세 관련 태도', 'e.²³⁾건강·은퇴' 영역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23) 9차년도 D영역은 파일럿 테스트 문항으로 공개 데이터에서는 제외되었으며 10차부터 공개되었다.

10차년도 조사에서는 ‘d.조세, 세무 행정에 대한 평가’와 ‘f.위험회피’ 영역이 추가되었다.

- 11차년도부터 부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c.납세 관련 태도’와 ‘d. 조세 세무 행정평가’ 조사영역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11차년도 부가 조사는 1998년 이후 결혼 또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출산 경험과 출산당시 경제활동상태, 출산 관련 지원제도의 존재 유무 및 사용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12차년도에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미세먼지 발생요인 및 원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시행에 대한 찬성여부 등 미세먼지 인식에 대한 부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 13차년도에는 시간선후, 공공재 공급기여에 대한 의식 조사 문항이 신설되었다.
- 14차년도에는 기본소득 및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하여 부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 15차년도에는 행복도 측정 문항과 납세의식 태도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근무형태 및 소득의 변화에 대한 부가조사가 시행되었다.
- 차수별 가구원 의식 조사의 조사영역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26> 차수별 가구원 의식 조사 조사영역

조사 차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조사 영역	행복도 측정	-	-	-	-	-	●
	사회·정치에 대한 인식	●	●	●	●	●	●
	조세·복지 제도	●	●	●	●	●	●
	납세 관련 태도	●	●	-	-	-	●
	조세·세무 행정 평가	-	●	-	-	-	-
	위협회피	-	●	●	●	●	●
	시간 선호	-	-	-	●	●	●
	공공재 공급 기여	-	-	-	●	●	●
	건강·은퇴	●	●	●	●	●	●
	<2018년 부가 조사> 출산 경험 및 출산 관련 지원 제도 사용현황	-	-	●	-	-	-
	<2019년 부가 조사>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	-	-	●	-	-
	<2021년 부가 조사> 기본소득 및 코로나19 정책 관련	-	-	-	-	-	●
	<2022년 부가 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 및 소득 변화	-	-	-	-	-	●

1~15차년도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

발 행 일 : 2023. 12

발 행 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 데이터 및 관련 설명 자료에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재정패널DB팀(044-414-2473/2411, panel@kipf.re.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